

입법의견조사 2002-3

입법의견동향

(2002.8.11 ~ 2002. 11.10)

2002. 11.

研究者 : 宋 永 仙(專門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 입법의견 현황	7
◎ 헌 정	
○ 대선 공영제 도입관련 입법의견	8
○ 대통령당선자지위법(가칭) 제정의견	8
◎ 통일 · 외교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9
◎ 일반행정	
○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10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관련규정 개정의견	10
○ 행정위원회관련 입법의견	11
○ 행정조사관련 입법의견	11
◎ 내무 · 지방행정	
○ 도박법(가칭) 제정의견	13
○ 부패방지법 개정법률안	13
◎ 문화 · 관광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개정안	15
○ 방송법시행령 개정의견	15
○ 저작권법 개정의견	15
◎ 교육 · 학술	
○ 교육기본법 등 개정의견	16
○ 교육정책관련 입법의견	17
○ 미발령국립사대졸업생특별법(가칭) 제정의견	17

-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 19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의견 19
- 학교급식법 개정의견 20

◎ 노 동

- 공무원조합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21
- 근로기준법 개정의견 24
- 이주노동자 근로계약관련 입법의견 26
- 주5일근무제도 도입관련 입법의견 28

◎ 재정 · 경제

- 국민투자기금법 폐지안 33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의견 33
- 부가가치세법 개정의견 33
- 세제 개편안관련 입법의견 34
- 연기금 의결권행사관련 입법의견 37
- 자산운용업법(가칭) 제정의견 38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관련 입법의견 39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가칭) 제정의견 39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1

◎ 통상 · 산업

-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42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개정안 47
- 금융감독원 회계제도 개선안관련 입법의견 48
- 기업금융정책관련 입법의견 49
- 기업연금법(가칭) 제정의견 50
-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의견 50
- 보험업법 개정안 51
-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개정의견 52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의견 52
- 예금자보호법 개정의견 53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53
○ 전자금융거래법(가칭) 제정의견	53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54
◎ 농림·해양수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	55
○ 선원법관련 입법의견	55
◎ 건설·교통	
○ 강북개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56
○ 임대주택법 개정안	56
○ 주택건설촉진법 등 개정의견	57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58
○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59
○ 해운법 개정안	59
◎ 과학기술·정보통신	
○ 인터넷관련 입법의견	60
○ 전파법 개정의견	61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개정의견	62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62
◎ 환 경	
○ 환경법관련 입법의견	63
◎ 보건·복지	
○ 기업연금제 도입관련 입법의견	65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67
○ 암관리법(가칭) 제정의견	69
○ 의료분쟁관련 입법의견	69
○ 장애인·여성 할당제관련 입법의견	70

◎ 법원·법무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 71
- 공증인법 개정의견 71
- 사면법 개정의견 71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안 73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의견 73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가칭) 제정의견 73
- 상법 개정의견 74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의견 75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75
- 통합도산법(가칭) 제정의견 7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 개정안 88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89

※ 국회처리 법률목록 및 주요법률 요지(2002년 11월 14일 현재) 90

◎ 입법의견 현황(2002. 8. 11 ~ 2002. 11. 10)

입법의견조사 제2002-3호에서는 2002년 8월 11일부터 2002년 11월 10일까지 3개월간 각종 언론매체, 학회세미나, 유관단체 토론회, 공청회, 정부부처 및 정당자료 등에 공표되거나 제기된 각계 각층의 입법의견 74건이 접수되었다. 그 중 개정의견은 58건, 제정의견은 16건이다. 이하에서는 입법의견을 대한민국헌법령집의 분류체계를 참조하여 헌정, 통일·외교, 국방, 일반행정 등 16개 분야로 나누고, 이를 제정의견과 개정의견으로 재분류하였는 바, 아래의 표와 같다.

최근입법의견현황

분 야	건 수	제정의견	개정의견
◎ 헌 정	2	1	1
◎ 통일·외교	1	1	·
◎ 국 방	·	·	·
◎ 일반행정	4	1	3
◎ 내무·지방행정	2	1	1
◎ 문화·관광	3	·	3
◎ 교육·학술	6	1	5
◎ 노 동	4	1	3
◎ 재정·경제	9	2	7
◎ 통상·산업	13	3	10
◎ 농림·해양수산	2	·	2
◎ 건설·교통	6	1	5
◎ 과학기술·정보통신	4	·	4
◎ 환 경	1	·	1
◎ 보건·복지	5	2	3
◎ 법원·법무	12	2	10
총 건 수	74	16	58

현 정

○ 대선 공영제 도입관련 입법의견

- 오랜 세월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우리의 선거문화는 이제 겨우 관권 개입과 부정선거의 풍토에서는 벗어났으나, 아직 과열과 혼탁의 오명을 씻으려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 금권선거 자체가 야기하는 불공정성도 큰 문제이지만, 금권선거가 지속되는 한 과도한 선거비용이 필요하고 그것은 곧 정치권의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므로 미디어 중심의 선거운동을 확대하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선거공영제로의 전환은 당연함. 그러나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회균등과 선거운동의 자율을 보장하는 것도 정치활동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음. 후보자의 난립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기탁금을 20억원으로 책정한 것과 신문광고와 방송연설에 대한 국가지원 대상을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으로 한한 것 등은 지금의 정치현실을 감안할 때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에 불리한 조항임.
- 대규모 군중집회의 폐단을 막기 위해 정당연설회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후보자 개인의 연설회마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지나치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임.

: 한국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2. 9. 10.

○ 대통령당선자지위법(가칭) 제정의견

-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재정적 지원 등을 명문화하는 이른바 대통령 당선자 지위법 제정하도록 함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법에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직 인수위의 활동과 예산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는 바,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미국처럼 관련법을 만들 필요가 있음(이규택, 한나라당 원내총무).

: 한겨레신문, 2002. 11. 5.

통일 · 외교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일본이 북쪽과 수교교섭을 할 때에도 냉전구도하의 한·일 협상 당시의 자세를 유지하고 분단의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는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일본이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당시의 태도를 그대로 북쪽에 적용하려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가칭)이 2001년 10월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하여야 함. 그러면 이 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정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는 일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앞으로 지속될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에 기초한 주장을 반박할 기초자료를 후손들에게 남겨 두어, 부끄러운 선조가 되지 않도록 해야함. 아울러 북쪽이 조·일 수교협상에서 경제난을 이유로 과거사에 대한 역사인식과 피해보상 문제를 적당히 처리하지 않도록 민족적 견지에서 협조하여야 할 것임.
- : 최봉태, 변호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정추진위 공동집행위원장, 한겨레신문, 2002. 8. 13.

일반행정

○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에 관한법률안이 확정됨. 이에 따르면, 공무원단체의 명칭은 공무원노조가 아닌 공무원조합으로 하고, 조합 가입 대상도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등 28만 여명으로 하였으며, 철도나 체신 등 현업 노조 대상자와 관리직 공무원, 인사 예산 공안 질서 업무 종사자들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급여수준 등을 놓고 공무원 노조와 정부가 협상을 할 수는 있으나 최종 결정권은 예산안 심의 의결권이 있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바, 협약체결권을 허용하지 않기로 함.
- 공무원 조합의 조직 형태는 국가직의 경우 전국 단위로, 지방직은 광역시도 단위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교섭 당사자는 전국 단위는 중앙인사위원장, 지역 단위는 광역단체장으로 하고 노조 전임자는 무급 휴직을 조건으로 허가하며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다른 공무원단체의 설립을 허용함.

: 이상 동아일보, 2002. 9. 17.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관련규정 개정의견

- 사이버 공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인터넷이 상용화한 현실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는 바, 사이버 공간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법규를 개정해야 함.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사이버 공간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홍보물 조차 게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불법·음성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 또는 비난하는 사이트와 글이 난무하고 있음.
- 대선 후보와 관련 각종 사이트에 게재된 글은 비방의 한계를 넘어 테러 수준에 이른 바, 인터넷을 건전한 선거운동 공간으로 활용해야 하며, 위법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야 함.

: 민경배, 사이버문화연구소장,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002대선유권자연

대 주최 ‘정보화 시대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운동과 선거법’, 2002. 10. 18.

○ 행정위원회관련 입법의견

- 행정의 중립성과 정책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행정위원회는 최근 3~4년사이 10여개가 늘어 35개가 운영중에 있지만, 설립 취지와 달리 독립제 행정기관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적지 않으며, 최근에는 위원회 기능과 독립이 문제시되고 있음. 이는 행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과 위원회의 독립성 부족 등에 기인하는 바, 즉, 위원간의 독립성 결여(예 공정위, 금감위 : 위원장은 장관급, 상임위원은 1급 등),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에 대한 사무국의 실질적 지원 차이, 위원회의 독립성 미확보 등임. 특히 공정위와 같이 사실상 1심 법원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행정위원회가 실질적인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위원들을 대등한 위치로 조정하고, 준사법 기능을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임명시 국회 추천이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여야 하는 데, 이는 심판기능을 가진 위원회에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상하관계에 있고, 모든 위원을 대통령이 선임하면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의 중립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임. 아울러 '98년 행정소송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아직 2심제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3심제로 변경하여야 함.
- 기능이나 설치목적이 중복되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위원회는 정비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위원회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함.
- 위원회 설립 근거법이나 기준을 신설해야 함. 미국의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와 같이 (가칭) 『행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위원회의 신설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http://www.fki.or.kr/>, 2002. 9. 23.

○ 행정조사관련 입법의견

- 행정기관들이 법 이행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법수사권과 유사한 행정

조사권을 발동하고 엄청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적법절차가 중요해지고 있음. 행정조사가 잦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바, ①조사권한에 비해 내부통제절차가 미흡함. 특히, 부당하거나 과도한 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가 결여되어 있음. ②조사관이 불법행위의 증거로 제시하는 자료를 피심인이 검토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적임. ③심결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위원회와 위원 상호간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장치가 미흡함. ④사건처리 과정의 핵심사안이 위원장 등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제기관의 운영취지에 충실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우리의 공정위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러한 문제를 조사권 행사에 대한 통제절차의 명확화, 피심인의 권리 보장을 통한 대심구조의 확립, 주요 사안에 대한 위원회 의결의 의무화 등을 통해 보완하고 있음.

-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①조사요건을 법에 구체화하고 내부통제절차를 보완해야 함. 특히 조사부담이 큰 현장조사권 등은 조사기간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과도한 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②피심인이 심사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심결과정에서 심사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신을 변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③위원의 임명시 국회의 동의나 추천절차를 받도록 하여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원간의 상하관계도 대등한 관계로 조정하여 위원 상호간의 독립성도 높여야 함. ④조사의 승인, 사건의 심결부의 여부 등 주요 사안은 위원장이 단독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운영취지를 되살리도록 해야 함.

: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http://www.fki.or.kr/>, 2002. 11. 12.

내무 · 지방행정

○ 도박법(가칭) 제정의견

- 강원랜드를 비롯해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합법적인 도박산업은 모두 국회가 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으로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규모는 2001년 9조223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5.5% 늘어났으며 2002년에는 1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 연간 이용자수도 2001년 2260여만명으로 전년보다 47.7%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돼 국민 2명 중 1명 꼴로 경마나 경륜, 카지노, 복권 등을 즐기는 셈이며, 이것도 모자라 전국적으로 수십 곳의 지자체가 카지노 유치경쟁을 벌이고 최근에는 경견장까지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그렇지만 도박중독 방지 대책이나 치료시설은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박산업 확산에 따른 도박의 부작용 방지 대책도 마련되어야 함. 미국에서는 지난 1997년 법을 제정해 미국 도박영향조사위원회를 조직한 뒤 범정부 차원에서 도박산업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바, 우리도 시급히 국가도박산업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우리 사회에 도박이 미치고 있는 영향을 조사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도박관련 법규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박법(가칭)을 제정하고 도박중독관련 기구의 설립 및 카지노감독위원회의 구성이 요망됨.

: 이상 원기준, 목사 · 광산지역사회연구소장, 한겨레신문, 2002. 9. 27.

○ 부패방지법 개정법률안

-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고발대상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부패방지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시정 · 보완하고자, ①부패행위의 정의규정에 대통령 친족이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추가하고(안 제2조제3호다목), ②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에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직무감찰을 추가하며(안 제11조제2호의2), ③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하지 못함(안 제 29조제3항). ④부패방지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안 제 36조제1항), ⑤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1조의2).

: 김원웅의원 대표발의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 2002. 10. 18.

문화 · 관광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개정안

- 그 동안 문화관광부 장관이 갖고 있던 박물관과 미술관의 등록과 감독, 등록취소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함. 또한 개정안은 사립박물관과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및 감독권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법개정함.

: 한겨레신문, 2002. 10. 23.

○ 방송법시행령 개정의견

- 방송위원회가 방송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고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에 예외규정을 두기로 결정하여 홈쇼핑 업계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는 바,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자총액제한 대상인 대기업이나 그 계열사는 그 동안 종합유선방송분야 사업자의 지분을 33% 이상 소유할 수 없었는데,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의 계열사인 프로그램송출업자(PP)는 이 규정을 적용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논란의 여지는 2001년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으로 변경한 대기업의 기준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 업체들의 의견을 거친 후 법제화해야 할 것임.

: 한겨레신문, 2002. 8. 13.

○ 저작권법 개정의견

- MP3 음악파일 공유를 둘러싼 소리바다 저작권 분쟁은 인터넷이 생기면서 새롭게 나타난 문제이며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분쟁을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미국·일본의 전자상거래 규정이 유럽등 기타 국가의 법조항과 상이하여 국가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우리 나라도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야 함.

: 한국인터넷법학회 학술대회, 2002. 8. 28.

교육 · 학술

○ 교육기본법 등 개정의견

- 2001년 우리나라 특수아동의 출현율은 2.71%로 초등학교 학령 400만명 중에 11만명으로 추정되나, 실제로 취학중인 아이는 5만4천명에 불과하며 또한 0~5살 특수보육 대상이 10만명 정도로 추정되나 특수보육 중인 아이는 겨우 2600여명, 유아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는 1765명에 불과함. 이 중 유치원 특수학급에 취원 중인 장애어린이가 268명(서울 56명), 유치원 일반학급에는 16명(서울 0명)으로 장애유아의 통합교육은 거의 전무해 특수교육진흥법상 규정된 유치원 무상교육 원칙이 무색한 실정임.
-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하여 학교에 배치한 경우라는 단서 때문에 배정된 유치원에 현실적으로 입학하기 어려운 장애어린이들은 사설 유치원에서의 입학거부 등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음.
- 교육기본법이 헌법의 취지에 따라 초·중등학교 과정을 무상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는데도 초등교육과 연계되어야 할 취학 전 장애어린이들의 치료교육, 유치원교육이 유상이라면, 이는 무상 의무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장애아의 특성상 취학 전 치료보육과 교육 없이는 취학하기가 어려운데도 현행 법제도는 취학 전 특수보육을 방치하면서 취학 후의 특수교육을 보장한다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임.
- 국가와 자치단체는 소수의 복지관 조기교실, 국공립 특수유치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어린이의 치료교육을 공공화하여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치료교육 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다수의 장애아들이 대기상태에서 치료교육 기회를 놓치고 있고, 중증의 아이일수록 치료교육 기회에서 밀려나고 있음.
- 이런 모순 때문에 보통 장애아 부모들은 취학 전 치료교육을 위해 일반아동보다 두 배 많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저소득 가정의 장애어린이들은 치료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하겠음.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어린이의 치료교육 문제를 함께 고민하여 장애

아동 조기진단 체계, 치료교육의 공공 무상화, 학부모의 특수교육 운영 참여 등 공공성의 관점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박인용, 장애아동부모의 연대와 희망(littlepower.org) 운영자, 한겨레신문, 2002. 10. 19.

○ 교육정책관련 입법의견

- 현행 교육정책중 고교평준화제도는 헌법 제31조의 능력에 따른 균등 교육권, 헌법 제10조 등에 의한 학교선택권 및 제31조제4항의 교육자주성원리 등에 배치되어 위헌소지가 있고, 자립형 사립고교제도 및 사립대학 기여입학제도는 헌법 제31조제1항의 교육받을 권리 및 제4항의 교육자주성을 위해 도입되어야 함.

- ①교육에서 평등원리는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데 반해 고교평준화제도는 절대적 평등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헌법 전문 및 제31조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제10조(행복추구권), 제36조제1항(가족생활 보장)에서 나오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며, 사립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포함하고 있는 제31조제4항의 교육자주성 원리에도 어긋남. ②등록금 자율책정권 및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부여하는 자립형 사립고교제도는 헌법 제31조제4항에 의한 사립고등학교 교육의 자율성, 자주성 보장 및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도입되어야 함. 특히, 교육부문에서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교육상품을 교육수요자가 적성에 맞게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임. ③사립대학의 기여입학제도는 사립대학의 재정난 해소 및 장학금 확대가 가능하여 제31조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며, 제31조제4항의 대학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함.

: 이상 양승두 연세대 교수, <http://www.fki.or.kr/>, 2002. 11. 18.

○ 미발령국립사대졸업생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1990년 헌법재판소는 구 교육공무원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공립사범대 우선임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고, 문교부는 1991~1993년 국공립 사대출신에게 70%의 우선권을 주는 경과조치를 거쳐 1994년부터 국공립·사

립대 차별 없는 완전공개전형(임용고시제도)을 실시하였는 바, 우선임용제 폐지로 교원으로 발령받지 못한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들이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교원발령을 촉구하고 나선 바, 이에 대한 찬반의견은 다음과 같음.

<찬성론>

- 당시 위헌판결은 구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립 사대를 졸업한 뒤 임용후보자로 발령을 기다리고 있던 졸업생들에게까지 소급적용해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였음. 2000년 군(軍) 가산점 위헌결정도 수험생에게만 적용되고 임용 명부에 기재된 임용대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헌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음.
- 당시 국공립 사대졸업생들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장학금을 받고 졸업 후에는 일정기간 의무 복무를 해야하는 등 우수교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우후죽순 늘어난 사립 사대생 및 교직이수자들로 인한 교원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졸속 도입된 공개전형은 여전히 많은 교사 지망생들을 평균 10대 1이 넘는 경쟁 속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임. 또 임용고시는 교사로서의 실습 및 교양습득을 통한 전문적 자질의 평가보다 단편적인 지식 암기를 측정하는데 쓰이고 있을 뿐임.
- 현재 사립대 재학생과 졸업예정자들의 자리를 빼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채용인원에 부가해 특별 증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교육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발령자들이 교단에 나가게 되면 교사의 수가 그만큼 증가하여 현장에서 부족한 법정 교원 수를 채울 수 있을 것임.

: 이선순 미발추 홍보부장

<반대론>

- 평등한 임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교원임용고시의 기본정신이 약화되고 훼손될 수 있음. 당시 위헌결정은 약40년 동안 사립사범대 졸업자의 교직진출 기회를 원천 봉쇄한 법률안이 헌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으므로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린 법안을 입법부가 특별법을 통해 위헌의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될 것임. 경과조치를 통해 충분한 구제과정을 거쳤고 이후에도 임용고시를 통해 다른 학생들과 공개 경쟁하거나 교원자격증을 갖고 사립학교로 갈 기회도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이제야 완전발령

을 요구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며, 특별법이 도입되면 전국 사립 사범대 졸업자와 교직 이수자, 교육대학원 졸업자와 같은 젊은 예비교사의 임용 기회가 유보되거나 박탈될 수 밖에 없음.

- 교육부 채용 인원은 한해 5,000명 가량이지만 6만~7만명의 수험생이 임용고시에 응시하고 있는 데다 20~30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역사 물리 등 비인기 과목을 이수한 경우가 미발령 교원 가운데 많아 예비교사들의 진출 기회를 오랫동안 봉쇄할 수도 있음. 또한 부전공 이수과목으로의 발령이나 상담교사·초등교사 발령을 요구하고 있지만 10여 년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제7차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가 의문임.

: 강순자 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장·이화여대 교수, 한국일보, 2002. 10. 18.

○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

- 대학에 산학협력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 법인 자격을 갖는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게 하고, 학교 부지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운영하는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함.

: 조선일보, 2002. 10. 16.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누군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둘러서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면 쌍방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정상은 참작되지만 법의 심판을 받게되어 있으나 성폭력의 경우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법의 제재를 받게 되어 있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은 청소년 보호라는 국가사회적인 책임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범죄로 취급하여 친고죄를 배제하여야 할 것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주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개인이나 단체가 고발할 수 있어야 함.
- 친고죄는 사실상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면 피해자인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우리 사회가 알게 모르게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응징보다는 피해자가 무슨 허물이 있지 않으냐는 인식이 커 청소년의 장래를 생각하여 쉬쉬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가족들도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피해의식에서 고소를 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음.

- 청소년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서 가정과 학교만이 아니고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청소년이나 장애아의 경우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성폭력에 희생되고 있어도 속수무책이었던 것이 현실인 바, 청소년에 대한 범죄가 남의 아이들이 아닌 우리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다면 친고죄 배제는 당연한 절차임.

: 한겨레신문, 2002. 9. 9.

- 청소년은 자기판단능력이 부족한 만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에 대하여 친고죄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바, 친고죄 적용을 배제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 현행 법률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친고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친고죄에 해당하는지는 그 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왔으나 대법원은 현행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친고죄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린바 있으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친고죄 적용을 배제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 이와 함께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교직 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2002. 9. 6.

○ 학교급식법 개정의견

- 1981년 학교급식법 제정 이후 전국 초·중·고교의 92%에서 학교급식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저급한 수입농산물 사용, 위탁업체 고용에 따른 질 낮은 급식, 일용직 영양사 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학교급식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실을 강화하고 안전한 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며 국내식량수급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야 함.

: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기자회견문, 한겨레신문, 2002. 11. 5.

노 동

○ 공무원조합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공무원조합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서 공무원단체의 명칭을 공무원조합으로 확정하였고, 노동3권 중에서는 공무원 조직을 구성하는 단결권과 보수 및 근무조건에 관해 협상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을 인정했으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인 협약 체결권 및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는 권한인 단체행동권은 제한하였고, 공무원조합은 민주노총 등 다른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에 가입하거나 이들과 연대해 집단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합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전국 단위, 지방공무원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입 대상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일반직 및 별정직·계약직·기능직·고용직이 모두 포함되나 인사·예산 등 관리운영 업무 종사자는 제외됨. 조합 전임자는 5년간 무급휴직을 전제로 허용하기로 함. 공무원조합의 시행 시기는 법 제정 3년 후인 2006년 1월로 결정함.
: 조선일보, 2002. 10. 16.

- 공무원노동기본권의 문제는 헌법이 일찍이 인정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인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하위법이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문제는 노동조합의 인정여부가 아니라 범위와 정도의 문제임. 공무원의 경우 헌법 제33조 제2항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한 이상 그에 따라야 하며 법률로써 노동3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임. 노조법 제5조의 단서가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는 바, 법률로써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여야 함. 헌법은 노동3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지 공무원의 단결권을 다시 제한하거나, 단체교섭권을 다시 제한하거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위임한 바가 없음. 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헌법과 관련 법률에 어긋나게 제한하는 등 문제가 있음.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문제>

- 노동조합은 헌법에서 규정하듯이 자주적인 단체이므로 공무원인 노동자가

참여하는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헌법은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지, 노동자를 일정한 그룹으로 나누어 그 각각에 적용되는 법의 제정을 예정하고 있지 않음.

- 교원노조법은 그 동안 전면 금지되어 왔던 교원이 노조결성권을 초중등교원에게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동법은 교원 중에서 대학교수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에 관하여 특별법 안에 많은 규제를 가함으로써 헌법위반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단체행동권을 전면 부인한 것은 헌법위반이 분명한 바, 이러한 문제점에서 보듯이 공무원노조를 특별법에 의해 허용하는 것은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를 모두 특별법이 아닌 일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규율되도록 하여야 하고,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관계에 관하여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을 통해서 반영하면 될 것임.

<체결권자의 문제>

-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있어서 ‘교섭권’과 ‘체결권’을 나누어 전자는 인정하되 후자는 인정하지 말자는 주장은 위임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교섭권과 체결권은 근원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교섭권자가 곧 체결권자임. 다만 교섭권자가 체결권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을 뿐으로 이를 법으로 ‘교섭권은 있으나 체결권은 없다’고 규정하는 태도는 법의 일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 특히 공무원의 경우 ‘노동2권만 인정하고 단체행동권은 부인하자’는 주장 또한 그 근거가 없는 것임. 단체행동권의 금지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등 공무원의 쟁의행위금지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선언이 있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1996년 1월 1일 부터는 공무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공무원의 노동3권 인정을 위한 입법적 조치는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임.

<명칭의 문제>

- 정부안에 의하면 공무원의 경우 국민정서를 이유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대신 ‘공무원단체’ 또는 ‘공무원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 하고, 공무원만 별도로 단결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무원단체’ 또는 ‘공무원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헌법상의 단결권 행사에 포섭하여야 하므로 노조법 자체를 개·폐하여야 할 것임. 결과적으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체가 단결권행사의 결과라면 헌법 제33조의 보호를 받는다는 취지로 노조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인 바, 현행 노조법의 명칭도 ‘단결법’, ‘노동단체법’ 따위로 개정하거나 아예 노조법 자체를 폐지하여야 할 것임. 나아가 현재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체신노동조합 등 공무원노동조합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정부안에 의해 ‘공무원직원조합’, ‘공무원직원단체’라는 명칭으로 단결권을 제한한다면 50년간 존립한 이들 공무원노동조합이 모두 해산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가입대상 제한의 문제>

- 공무원의 직종에 따라 공무원노조의 가입대상을 제한하거나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확일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입법적으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규정(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및 노조법 제5조 단서)을 삭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노동조합의 정의조항에서 노동조합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유, 즉 동조 동호 가목의 표현대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공무원만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됨. 구체적인 가입범위는 공무원노조가 자주적인 조합규약으로 정할 사항임.

<조직 및 구성의 문제>

- 현재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분리시키고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를 각각 전국단위로 지방공무원은 특별시·광역시·동 단위로 공무원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분리시켜 제한하고 있음. 이는 그야말로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기본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ILO와 유엔인권규약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또 해당 노동조합의 규칙에만 따르는 가운데 자

신이 선택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이를 노동조합의 자주적 규약에 의하지 않고 법에 의해서 조직화 방식을 규정하는 것은 구체적 실익도 없고 의미도 없는 바,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및 조직대상과 범위는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고유권한으로서 공무원노조의 자체 규약으로 정하거나 필요시 단체협약을 통하여 정할 사항이며, 노조전임자 문제와 복수노조 허용의 문제는 일반 노동법의 규정과 입법정책에 따르면 될 것임.

<교섭범위의 문제>

- 일반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사항이 보수, 기타근무조건에 관한 것이되 정책 결정이나, 관리권한사항, 인사결정사항이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교섭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사용자측 교섭당사자 제한의 문제>

- 교섭당사자는 공무원노조의 조직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며, 교원노조법에서와 같이 특정 부처를 교섭당사자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음. 구체적인 교섭단계에서 해당 정부부처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정부 교섭위원단'을 교섭당사자로 하여야 하며, 따라서 국무총리가 정부측 교섭대표가 되고 임금과 관련하여 중앙인사위원장,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장관 등 해당부처장이 포함되어야 함.

<금지 규정의 문제>

- 쟁의행위 금지, 교섭권 외부단체 위임·연계 금지규정(5년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제약하고 통제하려는 것임.

: 이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견서, 2002.

○ 근로기준법 개정의견

<근로기준법 개정안>

- 공공·금융보험 사업장과 1000인 이상 사업장은 2003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해야 함.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 100인 이상 사

업장은 2005년 7월,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 2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까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하며,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0년 전에 대통령령으로 시행 시기가 정해짐.

-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바뀜.
 - 월차 및 연차 휴가가 통합돼 연간 15일의 휴가를 받게 되며, 근속 연수 2년당 1일을 가산해 25일까지 연차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보상은 없음.
 - 시행 초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초과 근로 한도를 현행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4시간 분에 대한 초과 근로수당 할증률을 25%로 제한하였음.
 - 근로시간 단축과 연·월차 휴가 조정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법 부칙에 임금보전 원칙을 규정해 놓고 있음.
- : 조선일보, 2002. 10. 16.

<노동시간의 단축>

- 주당 40시간제 실시 대신 연월차휴가를 평균 10일(전체 노동자 평균근속연수 5.6년 기준) 축소함으로써 연간노동시간단축은 128시간으로써 한국 노동자의 연간노동시간은 2319시간으로 여전히 세계 최장시간인바, 실노동시간단축의 효과는 미미함.
- 실노동시간의 단축은 초과근로시간의 단축이 따라야 하는데 정부안대로 하면 초과근로시간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 임금보전이 안됨에 따른 임금부족분을 초과근로 확대로 유도하는 등 초과근로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더구나 신입사원의 연월차휴가가 15일로 단축됨에 따라 ILO 조약상의 연간 3주 이상의 연차휴가 보장에도 못미치게 됨.

<여성, 중소기업비정규노동자의 확대와 차별강화 초래>

- 시행시기 더욱 늦춰져 중소기업 비정규 노동자 차별 : 1백명이상 사업장 시행시기를 추가(2005년 7월)하여 50명이상, 20명이상 사업장의 시행시기가 1년씩 더 늦춰지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함.

<근로조건 저하(임금삭감)>

- 휴가수당을 폐지하여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월차휴가수당 미

지급하고,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원칙을 명기함으로써 임금저하금지가 법적으로 확실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임금보전을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시행초년도 1회에 한해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시간급 통상임금을 인상하지 못할 시에는 시행 2년차부터 실질임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큼. 특히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됨. 유급휴가와 관련된 임금 및 수당을 별도로 보전하지 않도록 한 것 또한 큰 폭의 임금하락을 초래하게 됨.

<노동강도 강화>

- 주당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확대하여 노동강도를 강화(현행 12시간)하고, 변형근로시간제를 현행 1개월 단위에서 3개월 단위로 확대함.

<노사자율교섭 원칙 침해로 기존의 근로조건 저하>

- 대기업 노조 등이 단협으로 노동조건 개악에 대응할 수 없도록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개정된 조항에 맞춰 변경하도록 함.
: 이상 민주노총 정책보고서 2002-08, 『주5일제 관련 근로기준법개악안』, 2002. 10. 16.

○ 이주노동자 근로계약관련 입법의견

-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들은 보통의 산업연수생과 다른 경로를 통해 들어 오는데,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 중에서도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음. 원래 이 연수생들을 들여오는 목적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에 직접 투자하거나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외국에 투자한 산업체,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에 기술을 제공하는 산업체,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가 현지 외국인을 국내에서 연수시키기 위함이지만 이 연수생들은 진정한 의미의 연수를 받지 못하고, 국내 모기업의 부족한 단순노동력을 보충하는 구실을 해 왔음.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보호지침이 있으나, 이 지침은 국내 모기업이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때에만 적용하며, 해외 현지법인이 지급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음. 그러

나 노동법과 국제사법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위와 같은 결론은 부당함.

- 먼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산업연수생은 어떠한 명목으로 들어오든지 노동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임. 산업연수생들은 국내의 연수기업체가 지시하는 대로 노무를 제공하고, 근무 장소와 시간이 고정되며, 노무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명목은 산업연수이나 실질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국내기업도 부인하지 않고 있어 결국 산업연수생과 국내기업이 체결하는 연수계약은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이 됨. 일각에서는 해외 현지법인인 기업이 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외국에서 연수계약(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국내 노동법을 적용하지 못한다고 하나 국제사법 제28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강행규정(한국의 노동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국제사법에 반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 선택한 국가나 임금을 실제로 지급한 국가의 법은 중요하지 않음. 국제사법 규정의 취지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의사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연수생에게도 국제사법의 규정대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즉시 적용해야 하고 나아가 외국인력 도입제도로 남용되는 모든 산업연수생제도는 폐지하거나 적어도 축소해야 함. 그러나 노동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산업연수생 총정원이 6만명이나 증원되고 도입 경로가 더욱 늘어나게 되는 바,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연수추진을 하는 중소기업 이외에도 농축산업에 새로이 산업연수생이 도입되고, 건설업 분야는 크게 증원되며 농림부는 농협중앙회에 가칭 농업연수협력단을 설치해 놓고, 외국인 농업연수의 실시를 예정함. 그러나 현재의 산업연수생제는 송출비리, 저임금, 연수생 이탈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개선방안에 의하면 외국인력 도입 과정에 새로운 이해집단인 농협중앙회, 수협, 건설협회가 개입되어 위 기관을 산하단체로 둔 농림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참여하게 됨. 지금까지 산업연수생제의 폐지를 가장 반대해온 것이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관련부처였던 만큼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산업연수생 폐지가 더욱 어려워질 것임. 적어도 농축산업, 건설업, 연근해수산업의 산업연수생은 정상적인 제도인 고용허가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최홍엽,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겨레신문, 2002. 9. 28.

○ 주5일근무제도 도입관련 입법의견

-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이 49시간 내외에 달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실근로시간 단축효과는 거의 없고 법정근로시간 단축분 만큼의 시간외 수당 등 약 15%의 인건비 부담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더욱이 노동계는 주5일 근무제 도입시 폐지되는 연월차 및 생리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주장함으로써, 20%를 훨씬 넘는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실근로시간이 단축된 이후에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으며, 따라서 그 충격이 아주 미미하였는 바, 아직도 실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 사이의 격차가 큰 우리나라 현실에서 무리하게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보다는 초과근로 할증률 조정, 휴가사용률 제고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한 후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근접했을 때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합리적임. 현행법 하에서도 규정한 휴일과 휴가를 모두 소진하면,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없이도 정상 근로시간은 주당 38~36시간에 불과하게 됨.
-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은 ①주5일제를 도입하더라도 총휴일수는 최소한 일본의 휴일수(129~139일)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②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주5일 근무제 도입시 폐지되는 생리휴가와 연월차휴가의 임금보전을 금지하고, 잘못된 관행인 유급주휴제를 무급주휴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임금보전의 범위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하는 4시간분 임금에 한정된다는 점을 법개정 내용에 반드시 명기해야 할 것임. ③현행 주6일 근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근로조건제도의 상의 과잉보호 규정들을 주5일 근무제 도입시에는 마땅히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해야 할 것임. 초과근로 할증률을 ILO기준인 25%로 조정하고, 탄력근로시간제를 국제 수준인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며, 생리휴가를 국제기준에 따라 폐지하고, 휴일·휴가의 실제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금지해야 함.

: 이상 전국경제인연합회, '주5일 근무제, 무엇이 문제인가', 2002. 8. 28.

<시행시기>

- 주5일제 관련 정부입법안에 의하면 주5일근무제의 시행시기를 5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계적 도입은 가능한 한 주5일 근무

제 실시를 늦추려는 것으로, 주5일 근무제 실시의 효과가 하루 빨리, 전 노동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5일 근무제 정착에 장애만 될 것임.

- 특히 전체 노동자의 58.6%에 달하는 30인 미만 업체 근무 노동자의 주5일 근무 실시시기를 못 박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것은 사회의 약자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수정해야 함. 근로기준법 개정 없이도 노사합의로 주5일 근무제 도입이 가능한 대기업 노동자와 달리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개정 없이는 사실상 주5일 근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30인 미만 업체 노동자 주5일 실시시기를 못 박지 않은 법안은 주5일 도입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것인바, 중소기업 업체 노동자의 주5일 도입 시기를 명시하여 차별없이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함.
- 현실적으로 시행과정상에서의 준비기간을 고려하더라도 늦어도 2-3년 이내에는 모든 노동자가 주5일제를 적용받도록 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동시에 실시하고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 학교 주5일수업제의 경우도 동시에 실시하여야 노동시간단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탄력적 근로시간제>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제한 노동시간 현행 유지는 실노동시간 단축이란 주5일 근무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현행 1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3개월 단위로 확대하면서 법정 노동시간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4시간이 주는 데 제한 노동시간을 현행대로 하루 12시간 주 52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은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함. 실질 노동시간이 주50시간대에 육박하는 데 탄력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것 자체가 긴 시간 노동을 부채질할 것이므로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제한 노동시간도 주40시간 노동제 도입에 발맞춰 최소한 하루 10시간 주48시간으로 제한해야만 실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면 노동강도가 크게 늘어날 뿐 아니라 불규칙, 장시간노동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크게 악화될 것임. 특히 계절적 요인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큰 유통, 서비스업과 계절상품을 생산하는 업체, 납기일을 맞추어야 하는 제조업종과 중소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에 따라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삭감이 있게 될 것이고, 이는 실노동시간단축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주5일제 도입의 근본취지를 무위로 돌리는 것임.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실노동시간이 충분히 줄어든 이후에나 논의를 해야 할 문제이다. 그전에는 오히려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 주 단위의 노동한도를 축소해야 함. 즉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 10시간, 주 48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연월차휴가>

- 만약 하루 8시간 노동일을 기준으로 실제노동시간을 계산한다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일은 총 306일에 달함(2,447시간/8시간=306일). 즉, 근로기준법에 정한 하루 8시간 노동일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가 행한 노동일은 연 306일에 이르고, 계산상 연 휴일수는 59일에 불과함. 만약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어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되어도 8시간 노동일 기준 휴일수는 85일에 불과함.
- 우리나라에서는 연차휴가취득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휴가 부여권이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휴가사용율이 매우 낮음.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을 6개월 근속자로 완화하고, 그 이하 근속자는 근속기간에 비례해서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며, 휴가사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 가운데 적어도 한번은 2주이상의 연속휴가를 보장해야 함.
- 또한 노동시간단축의 취지에 비취볼 때 휴가를 꼭 사용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휴가 사용률이 낮은 이유가 대부분 경영진 쪽에 있는 현실에서 사용자에게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은 자칫 휴가도 못 가고 임금도 못 받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기업은 휴가 사용을 전제로 생산 또는 인력운용 계획을 세워야 하며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용주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함.

<초과노동한도, 할증률>

- 초과노동시간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은 연간 2,447시간에 달하는 실노동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줄여 삶의 질을 높이자는 노동시간단축의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또한 최초 4시간분에 대한 할증률을

25%로 낮추게 되면 사용자들의 한국의 장시간 노동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긴 법정노동시간과 함께 지나치게 긴 초과노동시간이므로 실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초과노동한도를 축소하고 휴일휴가의 사용을 확대해야 함.

- 또한 초과노동에 대한 할증률을 높여 사용자들이 초과노동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인을 없애야 할 것으로 일본도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때 할증률을 인상한 바 있음.

<임금보전>

- 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한 임금보전과 관련하여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임금보전원칙만을 법 부칙에 명시할 방침이나 이는 구체적인 보전방안이 법에 의해 보장되지 않고 ‘임금보전’ 원칙만을 선언적으로 명시할 경우 비정규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임금보전이 어렵게 되는 것임.
- 임금보전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지금도 산업현장에서는 정부의 감독소홀과 사용자들의 불법, 탈법행위로 인해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더구나 무노조사업장, 중소기업 세사업장의 경우는 말할 필요조차 없는 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전항목을 법에 명시하여야 함.

<유급주휴>

-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삭감없이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주휴를 무급화하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일급제, 개수임금제(도급) 노동자의 경우 임금보전에 대한 원칙만을 명시할 경우 시간급인상 또는 임률조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최저임금의 경우에도 월급여에 기초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시급으로 환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노동시간 단축과 주휴무급화에 따라 실질임금이 하락할 수 있음. 따라서 최저임금은 물론이고 시급·일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률을 인상하여 실질임금의 하락을 방지하여야 함.

<생리휴가>

- 유급생리휴가 제도는 모성보호 관련 규정으로서 노동시간단축문제와 연계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먼저 ILO 기준에 맞게 산전, 후 휴가를 상향 조정하고 간병휴직제도 등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여러 조건이 정비된 시점에서 검토할 문제임.

: 민주노총, '주5일 근무제 정부입법안에 대한 입장', 2002. 9. 5.

- 현행 정부 입법안대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해외이전과 외국인투자 환경 악화 등으로 산업공동화 현상이 가속되어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임.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주5일 근무제의 내용이 잘못되어 우리 경제를 후퇴시키지 않도록, 국제 기준·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다음의 의견을 제시함.

- ①주5일 근무제의 도입시기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실근로시간이 주 44시간 이하가 되는 시점에서 시행하여야 함. ②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반드시 지키고, 과거 잘못된 관행인 유급주휴제를 무급주휴제로 전환해야 하며, 기존의 생리휴가와 연월차휴가의 임금보전을 금지하는 것이 당연함. ③휴가·휴일수는 최소한 일본의 휴일수(129~139일)를 초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8,900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33,000의 일본보다 7일이나 많은 휴일수를 수용하기는 어려움. ④제도개선은 국제기준에 맞게 추진하여, 초과근로 할증률을 ILO 및 일본 기준인 25%로 조정하고, 생리휴가를 폐지하며 탄력근로시간제를 국제 수준인 1년으로 확대해야 함.

- 이상의 의견은 우리 경제와 기업이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막대한 추가 부담을 이겨내기 위한 최소한의 한계조건이며, 따라서 노동계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반영한 노사정위案 및 정부의 입법안 등은 합리적인 논의를 위한 적절한 대안이 되기 어려움.

: 이상 전국경제인연합회 양세영 경제조사본부 팀장, 2002. 11. 5.

재정 · 경제

○ 국민투자기금법 폐지안

- 중·화학공업 등 주요 산업 육성을 위한 투·융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던 국민투자기금을 폐지하고, 나머지 자산을 일반회계에 편입.

: 조선일보, 2002. 10. 16.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의견

- 지금까지 각종 기금이 정부 소관부처에 의해 관리되어, 제대로 감독받지 않고, 기금의 운용과 결산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되는 것으로 종결되어 온 바, 이에 모든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내역이 국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획예산처에게 전체 기금운용을 총괄하는 권한이 부여됨. 즉,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47개)의 운용권을 이전에는 각 기금의 소관부처 혹은 기금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여 왔으나 법개정이후 기획예산처가 소관부처나 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고, 가입자들이 참가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사실상 무력화되었는 바, 종래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의 사결정기구였지만, 이제는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전락하였음. 따라서 가입자의 노후예탁금인 연금기금의 운용권을 박탈하고, 기금의 자의적 운용을 강행케 하는 기금관리기본법 내용은 원상회복되어야 하고, 각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각 기금의 운용과 결산내용은 국회에서 엄정한 감독을 받아야 할 것임.

: 이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보고서 2002-9 『기금관리기본법의 문제점과 고용·산재보험유인하 비판』, 2002. 10. 28.

○ 부가가치세법 개정의견

-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대상 범위의 축소 방침은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세제를 단순화하기 위한 것임. 영세율은 매출세액뿐 아니라 매입세액도 빼주는 완전 면세로 수출품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면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부분면세 조치로 대표적 대상은 농산물임. 개정안에 전사적 자원관리(ERP) 설치기업 등에 대해서는 현행 사업장별 신고납부를 법인 본점별 신고납부로 바꾸는 내용도 담을 방침임.

: 재정경제부, 한겨레신문, 2002, 9. 7.

○ 세계 개편안관련 입법의견

- 2002년도 세법개정안은 자산소득의 부부합산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부동산시장 종합대책으로 두 차례나 수정 보완되는 바람에 세법 개정의 일관성이 훼손되었음.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온 첫 번째 개정안이 세금감면제도를 축소하고 근로자 소득공제를 추가로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선심성 세계개편이 되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다시 근로소득 특별공제를 확대한 것임. 자산소득의 부부합산과세에 대한 현재의 판결은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을 부부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을 문제삼은 것이지만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 과세하는 것을 문제삼은 것은 아니지만 설령 그 판결을 존중한다하더라도 소득세 과세에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4,000만원을 절반으로 나누어 개인당 2,000만원으로 하면 되는 것임. 금리 하락으로 예전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늘어나 금융시장이 불안해진다는 재정경제부의 우려는 타당성이 없음.
- 3차에 걸쳐 이뤄진 세계개편안의 핵심은 중산·서민층을 지원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공적자금 상황을 위해 세수를 증대하자는 것임. 세수 증대를 위해선 비과세 금융상품의 폐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축소를 비롯한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의 축소와 변칙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세강화조치를 취함.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해선 1차 개편안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한 연장 및 소득공제대상 확대,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되었고, 3차 개편안에 근로자 특별공제가 추가되었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의 확대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이 주어짐.
- 이러한 세계개편의 결과 세수는 상당 수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선 각종 세금감면 축소로 약 8,300억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이고, 반면에 중산·서민층 지원과 근로자 특별공제 확대로 약 2,500억원의 세수가 감

소할 것임. 또한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의 폐지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유지에 따라 세수 손실이 있는 반면에, 상속·증여세의 강화로 세수 증대가 예상됨. 근로자의 세부담은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로 1,700억원 정도 늘어나지만 특별공제 확대 등으로 전반적으로는 줄어 들 것임.

- 제2차 세제개편의 핵심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로 엄밀히 말하면 지난 몇 년간 정부가 고의로 부동산투기를 방조하기 위해 도입했던 부동산 경기 부양세제의 철회라고 할 수 있음. 분양권 전매 금지, 양도세 비과세 규정 강화,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등이 그러함. 이러한 투기 억제책으로 당분간 부동산투기 열풍은 어느 정도 둔화하고 세수도 증대되리라 예상되지만 교육문제와 만성적 초과수요와 같은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근본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그 효과가 오래 가지 않을 것임.
- 이번 세제개편안은 중산·서민층을 지원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불요불급한 세금감면을 축소하여 세수를 증대하려는 목표를 갖고 출발하였으나 근로자 특별공제의 확대,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의 폐지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의 현행 유지 등을 포함한 수정·보완 과정에서 세법 개정의 일관성을 훼손시켰음. 근로자의 세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과세 불공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

: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일보, 2002. 9. 11.

- 자산소득 부부합산제가 개인별 과세제로 전환됨에 따라 세무환경이 고액 자산가에게 훨씬 유리해지고, 세무당국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점 4천만원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부부간 자산 분산을 통한 탈세가 가능해짐.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을 감안해 공여지책으로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긴 하였으나, 병·의원, 사설학원 등의 소득을 투명하게 노출시킬 조세 인프라(세수확보 기반)를 갖추는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고액자산가에게 유리해진 조세환경>

- 자산소득 부부합산제에 대한 위헌 결정과 이를 반영한 세법 개정으로 은행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부유층이 절세(사실상 탈세)가 가능해짐. 지금까지는 남편, 아내의 금융소득을 합쳐 4천만원 이상

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무거운 세금을 물었으나 이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세금을 물기 때문에 세액이 큰 폭으로 낮아지게 되는 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점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금융 시장 불안을 이유로 들어 현행 유지를 고수하고 있음.

<조세 인프라(세수기반) 구축 노력 미흡>

- 개정될 세제에서는 고액 자산가가 크게 유리해진다는 비난을 의식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 폭을 최고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려주는 내용 추가하였으나, 특히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줄 뿐이어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ex. 연봉 3600만원, 의료비 지출 200만원인 경우 3%(108만원)를 초과하는 92만원에 소득세율을 곱한 만큼의 혜택을 주는 정도에 그침). 출산이나, 암 수술 등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의료비 공제 폭 확대에 따른 추가 혜택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교육비도 서민들에게 실제 큰 짐이 되는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병·의원, 사설학원 등의 소득을 투명하게 노출시키는 조세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임. 1998년 8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도입에 따라 음식·숙박업의 과표현실화율은 크게 높아진 반면, 신용카드 사각지대인 변호사, 회계사, 의사, 한의사 등 주요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 파악률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변칙적인 상속·증여 차단책 부실>

- 변칙적인 상속·증여의 예방 장치로 비상장 주식을 상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 범위를 넓히고 사실상의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유형을 7가지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함. 그러나 이런 방법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바, 이런 규제로는 교묘히 범망을 피해가는 변칙 상속·증여를 뒤따라가는데 그치게 됨. 결국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에 따라 사실상의 부의 이전에 대해 광범위하게 세금을 매기는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하지 않고는 새로운 변칙 수단을 막을 수 없음.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외면>

- 수년 전부터 꾸준히 거론되어 온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대만사

례의 경우는 법인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개인을 한꺼번에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곧바로 종합과세를 함으로써 부작용이 빚어진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고 있어 추가로 대상에 포함될 과세 대상은 많지 않음(윤종훈, 회계사).

: 이상 한겨레신문, 2002. 9. 11.

○ 연기금 의결권행사관련 입법의견

-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의무화하고 확대하려는 각종 대안제시에 앞서 기관투자자의 소유지배구조부터 시장규율에 의한 경영감시와 책임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특히 연기금은 보다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로 지배구조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기업 의결권 행사를 통해 정부나 특정집단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활용될 소지가 크므로 이의 개선이 시급함.
- 그 동안, 소수주주권 강화,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 집중투표제 도입, 회계 및 공시제도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지배구조가 낙후되어 있다는 시각하에,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강화로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고자 함.
- 원칙적으로 은행, 증권, 투신, 보험,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은 고객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기업의 경영을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한 증권의 기관화현상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지배주주처럼 상당한 비율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강제화 또는 확대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①우선 기관투자자의 본질과 동떨어진 것으로, 기관 투자자의 본질은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투자하는 존재이고 따라서, 기관투자자는 정부나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취지와 달리 소액주주보다는 고객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며, 기업가치 극대화가 아닌 운용자산 극대화를 추구함. 또 기관투자자들은 자산운용에 관한 전문가이지 회사운영이나 경영판단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본래적 기능에도 맞지 않고 비효율적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의 여부이고, 그 외 기업지배구조, 이사회, 투명성 등의 기준은 투자 결정을 위한 부수적 참고

자료일 뿐임. ②기관 투자가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임. 기관투자가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도 의결권 행사를 강제할 필요 없이 기관투자자들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스스로 행사하면 됨. ③현행 기금관리기본법 3조는 ‘기금관리 주체는 당해 기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고, 예외적 허용 조건인설치 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 운용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 한해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임. 장기적으로는 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늘려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산 운용 주체의 전문성 강화와 기금의 지배구조 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연기금은 보다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로 지배구조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기업 의결권 행사를 통해 정부나 특정집단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활용될 소지가 크므로 개선이 시급함.
-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기관투자자들이 일정규모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선진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중단되어야 함. 의결권 행사를 통한 기업감시 역할은 주식 소유의 기관화현상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지 기관투자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위적으로 강제한다고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님.

○ 자산운용업법(가칭) 제정의견

- 은행 불특정금전신탁과 보험사 변액보험에서 신규 대출을 금지하고, 기존의 대출은 만기가 도래하면 연장하지 않고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산운용업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함. 현재 불특정금전신탁의 수신고는 55조원으로 이중 4조5천억원 정도가 대출로 나가고 있으며, 은행 신탁의 대출을 금지하더라도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은행 고유계정이 신탁대출을 흡수할 수 있어 자금 경색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번 조치로 은행 신탁과 보험사 변액보험은 앞으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 비중을 늘릴 것으로 전망됨.

: 재정경제부, 중앙일보, 2002. 8. 13.

- 투신사 펀드의 계열사 주식편입 10%제한 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업법(가칭) 제정안에 따라 재벌계열투신사들의 운신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이는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인덱스펀드의 경우에, 덩치가 큰 일부 펀드에서 시가비중만큼 주식을 편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대신 10%를 넘는 주식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함.

: 재정경제부, 한겨레신문, 2002. 9. 28.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관련 입법의견

- 현행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지원은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한 수준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결손 기업이나 최저한세 납부 기업은 공제를 못 받으므로 지원효과가 미흡함.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이에 해당하는 거래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수입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및 부가세법상의 지원은 그 대상이 개인사업자에 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 등의 기업은 제외되어 있음.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효과가 간접적인 법인세나 소득세에 의한 지원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부가가치세 감면을 통한 혁신적 지원이 필요함.
- 현재 실행되는 제도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3을 변경, 법인세·소득세의 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공제로, 그 규모는 구매액의 0.5%를 구매액 및 판매액의 0.2%로, 대상 거래 방식은 전자입찰방식에 국한되었던 것을 시스템을 통한 전자거래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이와 같이 세제를 개편할 경우 향후 5년간 2조 4천억원의 세액이 경감되며, 동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증가와 과표양성화를 통한 2조 7천억원의 세수가 증가되어, 약 3천억원의 순세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됨(김유찬 계명대 교수).

: 이상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 주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방안 토론회』 발표문 요약, 2002. 10. 16.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가칭) 제정의견

- 정부는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인 바, 그 동안 여

러 차례 지적되었던 정부 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인 운용을 개선하고, 산하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지난 '98년부터 기획예산처의 주관하에 200여개 산하기관을 경영혁신대상 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인력조정 등 어느 정도 성과가 있긴 했지만, 종합적인 관리나 산하기관의 기능조정 등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한 바, 이는 경영혁신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지침 수준에서 추진되었고, 산하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제가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임. 종합적인 산하기관 관리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가칭)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함.
- 적용대상은 모든 산하기관으로, 관리수준은 규모나 성격에 따라 최종적인 적용대상기관은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이지만, 산하기관의 투명성 제고라는 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산하기관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산하기관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산하기관의 자회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도 포함되어야 함. 다만, 관리대상 기관수가 너무 많아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면, 기관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관리방법이나 수준을 달리하면 됨.
- 산하기관 신설이나 운영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당초 기획예산처 주관에서 주무부처로 바뀌고, 산하기관 조직정원 조정에 대한 기획예산처와의 사전협의를 사후통보로 완화되었는데, 이처럼 주무부처의 관리 아래 산하기관이 관리되면 부처의 편의대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엄정한 경영실적 평가를 바라기도 어려우므로 적어도 재정지원 규모가 큰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가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최선의 관리방식은 산하기관 운용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설립목적이나 사업내용 등 일반적인 사항과 함께 설립목적의 달성 정도, 국민 부담 규모, 다른 기관과의 업무 중복성, 민간활동에 대한 규제 요소도 모두 공개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매년 『정부 산하기관 백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 심사하는 절차를 둘 필요도 있음. 기금관리기본법, 부담금관리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등 유사한 취지의 법령에서는 모두 이 같은 절차를 두고 있음.

: 이상 전국경제인연합회 홍성일 규제조사본부 과장, 2002. 10. 17.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2003년부터 일정 규모 이하의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여행업, 유원지, 테마파크운영업 등의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 정도 줄이되, 특급호텔이나 카지노업, 유흥음식점업, 골프장 등 다른 서비스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법 개정안, 2002. 8. 14.

통상 · 산업

○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의 건

<노동관련>

-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경제특구에 대한 조세, 금융, 행정상의 지원조치 등 통상적인 외국인투자 유인정책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전체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배타적인 이익을 위해 노동기준과 환경보호, 독점제한 등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필수적이고 정당한 사회적 규제조치를 담고 있는 국내법과 국제규범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
- 경제특구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파견근로의 전면적이고 무제한적인 허용을 통해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국내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을 완전히 회피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와 월차휴가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노동자들로부터 최대 연간 24일의 유급휴가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자체의 형해화를 초래할 것임. 또한 경제특구법안은 우리 정부가 수락한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사회가 오랜 세월을 걸쳐 마련한 노동권과 환경, 독점규제 등에 관한 가치 있는 국제규범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교육관련>

- 법안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 마련의 명분하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약하고, 외국인에게는 특혜를 허용할 것을 추진하고 있는 바, 외국인학교 설립에 온갖 특혜를 주어 우리 교육정책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음. 법안에서는 외국인학교를 학교법인이 아닌 외국 교육기관이나 내국인이 설립하고, 국가는 내국인이 다니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이고,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일정한 재산출연 조항(사립학교법 10조)과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외국인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설치하는 약국에는 내국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시켜놓고, 교육기관에는 내국인을 입학시키기 위해 온갖 조치를 취하는 이중잣대가 동일한 법률에 적용되고 있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02. 8. 22.

<의료분야>

-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을 비롯하여 외국인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의료 부문과 관련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음.
- ‘외국인은 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허가를 얻는 경우 경제특별구역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은 현재 의료법 30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조항에 위배되며, 앞으로 현행 의료법의 개정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바,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본격적인 보건 의료체계의 시장화를 지향하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즉, 의료법인 설립조건 대폭 완화 및 영업이익의 해외송금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의료시장 개방의 전제로서 작용될 것임.
- 개설되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받은 의료서비스나 약제 등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요양비 및 임의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바, 이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의 개정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폐지와 더불어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이 법률안은 의료법인 영리법인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 등을 불러오게 됨으로 인해, 한국사회 보건 의료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공공 영역’으로 남아있는 건강보험체계는 지금 보다 점점 축소되어 갈 것임. 비급여나 본인부담을 대상으로 한 보험분야가 진출하고, 이들 보험자본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병원자본과의 결합을 추구하면서 보건 의료체계는 급속하게 ‘금융·병원 자본복합체’의 지배하에 편입해 들어갈 것이 예상됨. 그 결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성을 위주로 의료기관의 운영과 시스템의 변화가 초래될 것임.

- 그 동안 외국의 의료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국내의 법적·제도적 조건 때문으로 현재 입법예고된 경제특구법률안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폐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등을 더욱 가속화시키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뿌리까지 흔들리고 즉각적인 전민중의 건강권, 생존권 파탄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

: 보건복지민중연대, 참여연대홈페이지 자료실, 2002. 9. 11.

-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장소를 만들어줘야 하므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물론 노동 관련 규제 완화와 교육·의료 지원을 강화함. 또한 특구 내에서 파견근로제와 월차휴가제를 대폭 완화하고, 외국 법인의 학교 설립과 의료시설 설립 등을 허용함.

<노동 관련 규제 완화>

- 경제특구 내에서는 월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휴일 및 생리휴가는 무급화됨. 또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제조업의 경우 파견업종을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파견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나, 특구 내에서는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할 수 있음.
- 경제특구 내 외국인 기업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을 일정 규모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중소기업 고용업종제의 예외를 인정, 곡식건조기 등 45개 중기(中企) 고유 업종에 제한없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생활여건 개선>

- 경제특구 내에서는 민원서류를 포함한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고,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 일본 엔화 등이 자유롭게 허용됨.
- 교육기관 설립은 외국학교 법인에만 허용하고, 국내 학교법인 형태의 외국 교육기관이나 내국인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은 허용하지 않기로 함.
- 국제고등학교의 특구 내 우선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교원 임용 허용 등 관련 규정이 추가되었음.
- 특구 내에서는 외국인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외국에서 의사·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이들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음. 국내에서는 영리 법인에 의한 병원 설립이 허용되지 않지만, 특구 내에서는 외국인 전용 병원 설립이 허용되고 있음.

<세제지원 강화>

- 경제특구에 5000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고용 규모가 10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 외국 기업은 7년간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받게 됨.
- 외국인 투자기업 중 투자 규모 1000만달러 이상, 고용 규모 100명 이상인 제조업과 고도기술 수반 사업, 물류·관광업 등은 소득세·법인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음.

: 조선일보, 2002. 10. 16.

- 경제특구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유급 주휴, 생리휴가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정한 의무고용을 면제하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한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휴일 무급화 및 폐지>

- 현재 노동계, 경영계, 정부간 휴일휴가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노동시간단축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며 정부입법안에도 주휴무급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도 재정경제부가 유급휴일을 일방적으로 무급화하는 조항을 입법화하고 있음. 이 휴일 독소조항들은 사실상 경제특구안 노동자의 임금 삭감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특구 내 노동자의 대부분이 파견노동자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그 결과가 심각할 것임.

<장애인 의무고용>

- 우리나라 장애인고용 의무비율 2%는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게다가 실제 의무고용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을 엄격히 감독하고 나아가 장애인고용 의무비율을 높이는 일이 정부의 의무임.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특구에서 최소한의 장애인노동권을 박탈하고 있음.

<파견근로 확장>

- 근로자파견의 대상업무와 파견기간이 확장되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장은 물론이고 절대금지 업무로 명시된 건설공사현장,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업무, 선원업무에 대해서도 파견근로가 진행될 것. 결국 경제특구의 모든 공장이 파견노동자로 채워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

<노동기본권 부정>

- 경제특구법안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헌법 32조 3항은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헌법적 차원에서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정신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 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음. 그런데 경제특구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규정(휴가관련 54조, 57조, 71조)을 부정하고 있음.

<평등권 침해>

- 헌법은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특구법안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 월차휴가, 생리휴가를 부정하고, 파견노동자의 대상과 기간을 없애어 경제특구에 고용된 노동자와 기타 지역에 고용된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음. 이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원리를 위반하는 것임.

<국토 및 환경 파괴>

- 경제특구법안은 외국인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모든 인허가를 생략하고 나아가 개발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초지법, 산림법, 농지법, 하천법, 폐기물관리법, 수도법,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사수도법, 도시개발법, 공채채취법, 환경교통채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등 주요한 환경관련법안이 무력화됨. 또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대체초지조어비,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여러 환경개선부담의무도 감면해 줌.

<조세징수권의 포기>

-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개발사업자는 여러 환경관련 부담금을 감면받는 것과 함께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주요 직접세를 감면받음.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국세, 지방세가 감면되고,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에 자금이 지원되며,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도 감면됨. 경제특구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징수권을 공공연하게 포기하고 있음.

<교육시장화>

- 경제특구법안은 외국학교법인이 경제특구내에 초중등 및 대학(원)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음. 초중등교육기관이 외국학교법인에 개방되는 것은 공교육체계에 심각한 위협을 전해 줄 것임. 또한 내국인의 입학마저 허용됨으로써 사실상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상업교육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음. 현재의 취약한 공교육 여건에서 경제특구의 교육개방정책은 우리나라 공교육을 더욱 악화시키고 교육의 시장화를 증폭시킬 것.

<의료시장화>

- 경제특구법안은 외국인이 경제특구에서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음. 이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완전 상업의료체제가 될 것. 이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될 개연성이 높으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한다지만 우리나라 의료관행을 볼 때 고소득 내국인의 의료기관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음.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모든 의료정책은 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수립되어야 함.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02. 10. 25.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개정안

- 5년마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역별 성장유망산업의 집적 및 특화, 산업입지와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함.
: 조선일보, 2002. 10. 16.

○ 금융감독원 회계제도 개선안관련 입법의견

<이사회 최고경영진 감사 등의 역할 및 책임강화>

- 공시서류의 허위표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등에 CEO/CFO의 인증(서약)을 의무화하고 사실상 업무 지시자(대주주 등)에 대해서도 민사책임 부과함.
- 2001년부터 시행된 내부관리회계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중복 규제임. 이사회, 감사위원회(사외이사로 구성)와 주총을 통해 감시되고 승인된 사업보고서를 CEO가 또 인증하도록 하는 것은 상법상 회사 주요기관의 감시권한과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임. 현행 규정에도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승인에 따라 회계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고, 이미 회계감사준칙상 경영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영자확인서』를 대표이사 및 회계담당 임원이 작성·서명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굳이 법제화하지 않아도 주식시장 및 신용평가 등의 불이익으로 시장에서 회계부정이 정화될 것임.
- 미국의 기업회계개혁법과 관련하여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적용 예외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서둘러 도입하는 것은 지나치게 명분위주의 정책일 것임. 이미 상법에서 『사실상 이사제도』를 도입하여 사실상 업무 지시자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복 규제가 될 것임.

<연결재무제표 공시 강화>

- 개별(분기마다 제출)·연결(4월말 제출)·결합(6월말 제출)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결을 분기마다 제출할 경우 기업의 업무부담 크게 증가할 것이며, 전산시스템 미비, 자회사의 결산지연(특히 해외자회사나 소규모 자회사) 등 결산인프라 미비로 인해 제출시한 단축은 시기상조인 바, 연결재무제표 공시시 개별 및 결합재무제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기업의 결산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될 때까지 시한단축 유예하여야 함.

<비정기재무제표(합병재무제표 등)의 외부감사 의무화>

- 현재 분할·합병에 대한 재무정보는 외부감사를 받아 개별재무제표에 포함하여 이미 공시하고 있으며, 별도로 분할·합병 등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

받게 하는 것은 이중 부담임. 감사받은 재무제표에서 분할·합병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공시하도록 강화(별도의 외부감사의무 철회)하도록 함.

<스톡옵션의 가치산정시 공정가치법 적용 의무화>

- 기업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의성을 배제하고자 스톡옵션의 가치산정시 공정가치법을 의무화하고자 함에 대하여 현행은 공정가치법과 최소가치법 중 선택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상장기업의 경우 예상주가의 변동가능성 산출이 곤란(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상장기업을 찾기 어려움)하고, 공정가치법도 권리행사가능성, 예상주가변동가능성, 무위험이자를 산정 등에 대한 기업의 자의성 존재하는 바, 현행 유지하여야 함.

: 이상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http://www.fki.or.kr/>, 2002. 11. 8.

○ 기업금융정책관련 입법의견

- 기업금융 관련정책중 ①은행과 은행지주회사 주식소유 제한과 의결권 제한(동일인이 은행주식의 10% 초과보유 금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4% 초과 보유시 초과분의 의결권 제한 등), ②부채비율 200%규제, ③기업의 설립 및 증자와 관련된 출자총액제한 규제 등은 헌법 제119조의 자유시장경제원리,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및 제한에 대한 보상규정 등에 배치되는 위헌소지가 있음.
- 첫째,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와 의결권 제한규제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적 원리인 경쟁을 사전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경제에 관한 기본규정인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고, 소유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원의 자율적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제한과 그에 따른 보상규정에 위배되며, 제119조 제2항의 국가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대상이나 제126조의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둘째, 부채비율 200% 규제는 기업 자금조달방법의 결정과 그 결과는 불확실한 시장에서 기업가들의 창의적 경제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되며, 제119조 제2항의 국가조정대상이나 제126조의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에도 부합하지 않음. 셋째, 기업의 설립이나 증자와 관련된 출자총액규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는 기업가의 창의적 의사결정을 제한하여 헌법 제119조 제1항과 배치됨. 특히, 동조 제2항에 의해 정부가 시

장에 개입할 수 있지만 효율성의 결과라면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은 미약함. 또한 어느 누구나 창의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 없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상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임. 한편, 내부자본시장의 작동을 억압하여 경쟁적인 경제 주체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됨. 경제활동과 관련된 모든 헌법조항은 시장경제의 작동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삼아야 하고, 일정부분 정부의 개입영역을 보장하는 헌법조항들은 폐지 또는 재검토되어야 함.

: 김영용 전남대 교수, 전경련 보도자료, <http://www.fki.or.kr/>, 2002.

11. 7.

○ 기업연금법(가칭) 제정의견

- 증시 안정을 위해 2002년 10월 중 기업연금제 도입 시안(試案)을 마련,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결정함으로써 기업연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기업연금이란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불입, 주식·금융상품에 투자한 뒤 운용 금액을 퇴직금으로 되돌려주는 제도임.
- 시안에서는 미국처럼 별도의 기업연금법을 제정해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또 근로자가 퇴직 때 미리 정해진 금액을 돌려받는 확정급부형과 운용실적에 따라 돌려 받는 확정각출형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임.

: 재정경제부, 조선일보, 2002. 10. 7.

○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대부업 등록대상이면서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할 경우에도 이자율 제한, 부당 채권추심행위 금지, 대부계약서 교부의무 등 대부업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똑같이 적용을 받게 할 예정임. 대부업 등록 대상자중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자율 제한 등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들은 대부업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법 적용을 받도록 할 예정임.
- 대부업 등록 대상이 아닌(월평균 대부잔액이 5,000만원 미만이거나/대부

거래 상대방이 21인 이상이거나/전단지 등의 광고행위를 하지 않는) 대부분 업체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금융감독원, 한국일보, 2002. 10. 31.

○ 보험업법 개정안

- 예금보호 한도인 5천만원을 넘어선 보상분에 대하여 △다른 보험사가 80% △계약자가 20%를 물어내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함. 보험업법 개정 초안에서는 다른 보험사들이 1백% 물어주기로 하였던 것을 보험사의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80%로 낮추는 대신 나머지는 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임. 단 자동차 책임보험은 5천만원을 넘는 보상분도 전액 다른 보험사들이 물어주도록 함.
-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모집인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집인을 겸업할 수 있는 교차 모집을 2006년 4월부터 허용하기로 함. 당초 2003년 4월부터 교차 모집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보험사들이 모집 질서가 흐트러진다고 반발해 3년을 늦춘 것임. 온라인 보험사의 최저자본금은 개정 초안에서 1백50억원이던 것을 2백억원으로 올리고 보험사가 신상품을 보험개발원에 제출하도록 한 개정 초안을 변경해 분기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며 이렇게 제출된 보험 신상품 가운데 금융감독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험료 환급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우체국 보험과 택시공제 등 12개 공제에 대한 감독 강화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이해단체들과 정치권의 반발로 무산되고, 그 대신 각 공제의 주무부처가 자체적으로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 보험사 자산운용과 관련해선 당초 폐지하려던 비상장주식 투자 한도(총자산의 5%)를 보험사 대주주가 계열사와 연합해 비상장 기업을 지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함.
- 이밖에 보험사가 대주주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작은 금액으로, 융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40% 또는 총자산의 2% 중 작은 금액으로 각각 정하기로 함.

: 재정경제부, 보험업법 개정안, 중앙일보, 2002. 8. 16.

○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무역위원회는 분쟁을 다루는 준사법적 기관이므로 일반적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불공정무역행위에 관한 '사실상의 조사행위'는 변리사, 관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전문적인 지식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는 없음. 법률개정안이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를 무역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하고 있음은 현행과 같이 법률전문가인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를 위원 자격요건으로 유지해야 함.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신문, 2002. 9. 25.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의견

- 다단계판매업체의 조직을 이용한 신용카드 회원 모집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음. 이는 일부 다단계업체가 회원들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알선해준 뒤 카드 결제를 통해 물품을 강매하는 행위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임.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제14조 제3항에 '다단계판매로 신용카드·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며, 이는 사실상 방문판매법과 여신전문금융법 모두 다단계판매망을 이용한 신용카드 회원 모집을 허용한 것과 같음.
- 방문판매법은 애초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상품을 팔거나 신용카드 회원 모집을 위탁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했으나 2002년 7월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삭제되었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제14조의 2는 신용카드사와 회원 모집 계약을 체결한 자(회원 모집 위탁자)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수정없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 300여개에 이르는 다단계업체가 신용카드사와 업무 제휴를 통해 아무런 제한없이 회원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어, 물품강매에 따른 피해와 카드 연체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

: 김희경 YMCA 시민중계실 간사, 한겨레신문, 2002. 11. 9.

○ 예금자보호법 개정의견

- 전국 90개 단위수협도 2003년부터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 파산시 정부가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원금지급을 보장해주는 제도임. 신협과 단위수협은 예금자가 조합원인 금융기관이라 예금보호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을 개정한 것임(변양호, 금융정책국장).
- 2002년 7월말 현재 전국의 신협은 1,248개로 회원수는 544만명, 예금수신총액은 19조8,470억원이나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에서 2조2,574억원이 신협 예금 대지급에 쓰일 정도로 단위조합의 건전성이 떨어져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예금 인출등 회원들의 동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신협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9.9%로 은행권에 비해 부실채권 비율이 3배 이상 높음.
- 신협의 경우 예금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 통과 후 시행을 1년간 유예키로 하는 한편, 신협법 개정을 통해 예금자 보호를 위한 자체기금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임.
-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부실금융기관과 부실채무기업 외에 이들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금융부실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해서도 예보가 조사권을 갖도록 명문화하기로 하였음.

: 한국일보, 2002. 9. 6.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산업부장관은 시·도지사 추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의 협의를 거쳐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함.

: 조선일보, 2002. 10. 16.

○ 전자금융거래법(가칭) 제정의견

- 인터넷뱅킹 확산, 전자화폐 유통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3년부터 비밀번호 유출 등 고객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대해서는 고객이 모든 손실을 부담해야하고, 이동통신회사 등 비금융회사가 자금 결제, 전자 화폐 등 전자금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 당국의 인가·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련 사업에 대해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의 전자금융거래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함.

- 제정안에 따르면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이 자금 이체, 직불카드 발행, 결제 대행 등 전자금융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함. 단 환금성과 범용성이 높아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전자화폐 발행자는 자본금 50억원 이상의 요건을 갖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음.
 - 전자금융업자라도 비금융기관인 경우 대출 및 수신 행위가 금지되며, 일반 사업과의 겸영은 가능하지만 등록 업무별로 구분 계리를 해야 하며 전자화폐의 유동성 부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화폐 발행자는 일정 비율의 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토록 의무화하였고, 선불카드 발행자는 발행잔액의 10%내에서 법원에 공탁하도록 함.
 - 법안은 특히 금감위에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권, 업무정지 등 시정명령권 등을 부여하고 있음.
 - 전자금융 사고시 책임 분담과 관련, 고객의 고의·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이 자체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도록 함.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신상정보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타인에게 접근장치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등이고, 고객이 금융기관에 분실·도난 신고를 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는 금융기관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함.
- : 재정경제부, 한국일보, 2002. 10. 8.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 현행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은 병원, 호텔, 공연장, 공장, 점포, 학원 등 다수인이 출입·근무·거주하는 건물 중 면적 3천㎡(900평) 이상을 특수건물로 규정, 의무가입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가입 의무를 어길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인·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번 개정안은 기존 의무가입대상 외에 면적 3천㎡ 이상 콘도, 숙박업소, 농수산물매시장과 2천㎡ 이상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을 가입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이들 신규 가입대상은 바뀐 규정이 적용된 지 6개월 안에 가입절차를 끝내야 함. 이와 함께 의무보험제의 보상한도액을 사망, 후유장애 때 최고 6천만원에서 자동차책임보험과 같은 수준의 8천만원으로 높이기로 결정함.
- : 재정경제부, 한겨레신문, 2002. 9. 17.

농림·해양수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

- 농어가 관련 부채금리를 △중장기정책자금은 연 5.0%에서 3.0%로 △상호금융자금 금리는 6.5%에서 5.0%로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금리는 6.5%에서 3.0%로 △연대보증피해에 대한 특별자금 금리는 5.0%에서 3.0%로 각각 인하함.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농어가 가운데 70~80%가 2003년에만 2544억원에 이르는 이자경감 혜택을 추가로 볼 전망이다. 현재 자금별 대출 잔액은 △중장기정책자금(추가지원 예정분 포함) 3조6113억원 △상호금융자금 8조1000억원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2조5000억원 △연대보증피해에 대한 특별자금 5000억원 등임(부채경감특별법 개정안).
- 금리를 추가로 내리면 빚을 성실하게 갚은 농어가만 피해를 봐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인 바, 이를 반대함(기획예산처).

: 동아일보, 2002. 10. 23.

○ 선원법관련 입법의견

- 근로기준법이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임에 비해 선원법은 선원의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와 선원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그 의미와 성질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임. 따라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2항의 차등적인 퇴직금제도의 설정금지규정은 선원과 선원 아닌 근로자 사이가 아니라 선원 상호간에 있어서의 차등적인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지하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므로 구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1981년 4월 이후에도 육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육원취업규칙이, 선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선원취업규칙이 각각 별도로 적용되어야 함

: 대법원전원재판부(2002다8025), 2002. 10. 17.

건설 · 교통

○ 강북개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최근의 부동산 과열은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가 폭발한 데다 교육열마저 겹쳐 빚어진 것으로 강북을 고급 주택지로 재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임. 수도권 신도시보다는 특별법의 제정을 거친 후 강북의 단독주택 지역을 대규모 재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강북 재개발의 구체적 방식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독주택가를 1만~10만평씩 대규모로 재개발지구로 지정하자는 것으로 비리의 소지가 높은 민간 개발 대신 민·관(民官) 합동 방식으로 40~50층짜리 아파트인 고밀도로 개발하되, 주차장은 지하에 가구당 2대씩 만들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해야 함.

: 박승, 한국은행총재, SBS라디오와의 인터뷰, 2002. 9. 13, 조선일보, 2002. 9. 14.

○ 임대주택법 개정안

-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퇴직자 등 일반인들도 자금을 모아 조합을 구성하면 임대아파트를 지어 무주택자에게 세를 놓는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임대주택조합은 건설업체에 준해 국민주택기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됨. 또 임대아파트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제도도 대폭 강화되었음.

<임대주택조합 제도 신설>

- 지금까지는 주택사업자와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만이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었고, 일반인은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새 주택을 분양받은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몇 채씩 소규모로 운영하는 게 고작이었으나 앞으로는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 비교적 큰 규모로 아파트 등을 지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일반인도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임대주택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함. 임대주택조합은 임대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되고 일반 건설업체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임. 임대주택조합의 구체적인

설립 절차, 조합원 자격기준, 조합의 운영·관리방안, 기금 지원 혜택 등은 시행령으로 따로 정함.

<임차인 보호장치 강화>

- 지금까지 임대아파트 계약자는 건설기간에 한해서만 대한주택보증(주)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증 받았고 근저당이나 가등기담보 등 땅 주인의 제한물권 설정은 건설기간 동안만 금지되어왔음.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임대기간 중 임대사업자가 부도난 경우 임차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 외에는 보호장치가 없었으며, 더욱이 제한물권이 설정됐을 때는 임차보증금이 후순위가 되어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는 실정임.
- 그러나 2003년부터는 임차인 보증금 보호기간이 건설기간을 포함해 입주한 뒤 5~10년의 임대기간이 끝나고 분양전환할 때까지로 크게 연장되어 임차인들이 사업자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임대아파트에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 한편,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임대사업자와 입주민 사이에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문제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을 맡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이를 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 이상 한겨레신문, 2002. 10. 29.

○ 주택건설촉진법 등 개정의견

- 현재의 재건축사업기준은 도시계획 및 재개발 구역 사업에서 40년 이상 적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엄격하게 기준이 적용되어 할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훨씬 완화된 20년 이상을 적용 받고 있음. 단독주택을 비롯한 노후 콘크리트 건물조차 최소 40년 이상의 기준을 적용 받는데 더 튼튼해야 할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대한 재건축은 민간 주도의 사업성만을 중시한 시장 논리가 적용되어 왔음.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는 이미 1998년 이전부터 철근 콘크리트의 내구 수명을 60년, 기타 조적조, 벽돌조 건물은 40년으로 보고 있는 바, 이 규칙에 따르면 재개발의 경우에는. 내구 수명의 3분의 2를 넘어야 하므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40년,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일반 건물은 27년 이상이 경과해야 불량주택 범주에 들어가게 됨.

: 서울시특별시, 한국일보, 2002. 9. 30.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 2003년 하반기부터는 청약통장을 파는 사람뿐 아니라 사는 사람도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매매 거래자는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됨.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권을 파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음.
-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리모델링 조합 설립 방법 등을 규정하고 주민의 80% 동의만 확보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그 동안 재건축과 달리,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동의율 요건이 100%여서 한두 주민만 반대해도 리모델링이 불가능하였으나 개정 법안에 따라 리모델링 조합은 반대하는 주민의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갖게 되며, 소형평형을 리모델링할 경우, 개보수 비용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됨.
- 그 동안 시공사와 조합원들의 갈등이 많았던 지역주택조합 제도도 일부 법을 개정함. 현행법은 시공사 잘못으로 토지확보나 사업지연 등과 관련해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해도 시공사는 조합의 하도급업체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법안에는 시공사 손해배상규정이 신설돼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민간임대주택 조합제도도 신설되어 투자자들이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아파트를 지어 임대사업을 할 수 있음.

: 조선일보, 2002. 10. 16.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 노인 및 노인 부양가족을 위해 65세 이상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증 조부모)을 3년 이상 모신 무주택 가구주에게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0%에 대한 우선입주권을 주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9월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월 말부터 시행할 방침임.

- 고령화사회에 대비,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지급 대상을 현재의 60만명에서 내년에는 80만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고령자의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2003년부터 정년 58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고용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매달 30만원 정도의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함.

: 건설교통부, 동아일보, 2002. 9. 16.

○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 연안여객선을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대상에서 제외함.

: 조선일보, 2002. 10. 16.

○ 해운법 개정안

- 선박관리업에 외국 선박관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는 별도의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없이 빈 컨테이너 및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함.

: 조선일보, 2002. 10. 16.

○ 인터넷관련 입법의견

- 휴대전화 스캠 메일이 극성을 부리고, 대형 온라인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온라인 게임의 사이버 아이템 매매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등 정보화 시대의 부작용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기술(IT)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면서도 관련 법률과 제도는 '386'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정보화 시대에 정보는 상품보다 중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보를 '전자기록 장치에 의한 기록' 등으로 개념을 좁혀서라도 처벌조항을 형법에 넣어야 함(박상기, 연세대학교수).
- 1995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전자서명법 등 1백90여개의 법령을 정비했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 노동, 의료 분야 법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조용혁, 한국전산원 주임연구원).
- 이동통신 업체들이 자랑하는 '위치 확인 서비스'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휴대전화 사용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첨단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미아나 길 잃은 치매 노인을 금세 찾아낼 수 있다지만, 가입자의 위치가 노출돼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많음. 현재 위치정보보호및이용활성화등에관한법(가칭) 제정을 준비 중이지만 오·남용 우려를 제기하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음(정용환, 정보통부 정보화기반과장).
- 음반협회가 소리바다에 대해 음반 복제 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소리바다는 가처분 결정을 피해 새로운 방식으로 서비스를 재개하였음. P2P(peer to peer)방식을 통한 자료 교환과 양쪽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만한 법이 개인적 용도를 위해 복사하는 이른바 '사적 복제'는 저작권법 위배가 아니라고 보는데 P2P 방식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사적 복제인지 아닌지 이론조차 정립돼 있지 않은 상태임(유광현, 변호사).
-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정보화와 관련된 관련 법·제도 개선 움직임이 활발한데 이들 국가도 우리나라처럼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는 있지만, 당장 실생활에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분야와 개인의 프

라이버시 보호분야에 특히 두드러진다는 특징이 있음. ①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미국의 경우 통일상법 제4조와 전자자금이체법 등 두 가지 연방법이 거액의 자금을 전기·전자적 수단으로 이체하는 경우 은행과 고객간의 위험배분기준, 보안절차 등의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마존·e베이 등 닷컴기업 거래의 토대가 되고 있음. ②EU도 2000년 9월 18일 ‘전자화폐기관의 설립과 업무수행 및 감독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전자화폐를 전자적 장치에 저장된 지불수단으로 정의하며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있음. ③미국의 경우 e-메일 검색과 관련한 연방법(전자통신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이 1986년 제정됐을 정도로 이 분야에 관심이 높아 이 법을 현실과 맞게 계속 개정해 나가고 있음. ④일본 역시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행동지침’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직원들의 e-메일 등을 모니터링 할 때는 사전에 수집방법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제간 정보화 분쟁해결을 위한 입법작업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인터넷 무역의 기반이 되는 전자자금 이체의 경우 유엔 국제법거래위원회(UNCITRAL)에서 전자자금이체의 국제적 통일을 위해 87년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률지침’을 제정한 바 있음. 인터넷무역의 무관세화도 1998년부터 미국 주도로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최근엔 정보화 관련 국제법도 사이버상의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점차 세분화하고 있음.

: 중앙일보해설, 2002. 9. 16.

○ 전파법 개정의견

- 기존 방식인 대가할당 외에 주파수 경매제를 신설하고자 함. 대가할당 방식은 정부가 사업자들에게 주파수를 할당할 때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며, 가격을 미리 결정하는 방식임. 이에 반하여 주파수 경매제는 사업자들간 가격경쟁을 통해 최고가에 할당하는 방식임.
- 경매제가 신설된다고 해서 모든 주파수를 경매에 의해 할당하는 것은 아니며 법개정이 되더라도 대가할당 방식과 경매제 등 두 가지 방식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예정임.

: 정보통신부, 한국일보, 2002. 10. 19.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모든 국민이 지역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 바,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3년부터 초고속인터넷(ADSL)도 유선전화처럼 도서, 산간벽지 등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반 시설을 전국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함. 이에 따라 경남 38개면과 전남 19개면 등 2002년 8월말 현재 지리적 여건 때문에 ADSL이 보급되지 않은 전국 83개면에 ADSL망을 조기에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함. 또한 학력, 지역, 연령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 기구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설립함. 법인 형태로 출범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전산원의 자산과 조직 일부도 흡수하게 될 예정임.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개정안, 한국일보, 2002. 10. 8.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 프로그램 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개작권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함.

: 조선일보, 2002. 10. 16.

환 경

○ 환경법관련 입법의견

<일조방해>

- 날로 늘어가는 일조권 분쟁을 대기·토양·수질오염·악취·소음 등과 함께 환경오염으로 명문화하여 일조 피해를 환경분쟁에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동차 공회전 제한>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금지여부·해당지역 등 세부사항은 이 조례에서 결정되는데 환경부는 주차단속과 병행하여 공회전 운전자를 적발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시·도지사는 또한 기존 법에 정한 것보다 강화된 기준이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었음.

<불법 연료 사용자의 처벌>

- 가짜 휘발유 등 불법자동차 연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제조·공급·판매원 이외에 사용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 제조·공급·판매원은 현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노후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가 도입되고, 무공해·저공해 자동차 구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됨.

<골프장 농약금지 강화>

-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골프장의 잔디나 수목에 맹독성·고독성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수질환경보전법에 신설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도 기존의 1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강화함.
- 이밖에 축산폐수 방류시 축분 분리·저장 시설 설치 의무화, 바닷가 매

립·간척사업에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습지보호지역 출입시 이용료 징수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중앙일보, 2002. 11. 8.

보건·복지

○ 기업연금제 도입관련 입법의견

- 기업연금제는 △노동자 퇴직적립금을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쏟아 부어 노후 연금을 불안정하게 하고, △도입과정에서 영세사업장, 비정규노동자를 소외시키며, △기업비용의 감소만을 염두에 둔 제도로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 전혀 적합하지 않음.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이 문제라면 기업연금제 도입이 아니라 현행의 퇴직보험제를 강화하여 퇴직금의 안정적 수급을 보장해야 함. 정부주도의 제도도입은 정상적이지 않은 바, 노후소득보장제도, 사회적인 연금제도의 영역에서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은 안정적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취약 노동자의 소외나 배제가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함.

: 주진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기업연금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노후소득방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토론회 발제문, 2002 .11. 1.

- 퇴직금의 사외적립은 퇴직금의 지급보장 및 기업회계의 투명화를 위해 필요함. 이는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 이전에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임(즉, 기업연금제도는 퇴직금의 100% 사외적립을 기본 전제로 함). 그러나 운용자금의 사외유치효과(이자율효과)가 있어서 기업 측에서는 새로운 비용의 발생으로 볼 것임. 현재 상당 규모의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이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고 증가추세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현행 퇴직보험제도는 퇴직금의 사외적립이라는 기능의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으며 100% 적립의무도 없어서 사용주가 적립한 만큼만 보장이 가능하고, 퇴직보험제도를 강제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현재 도입되어 있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의 폐기가 전제되어야 함.

: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토론회 토론회문, 2002.. 11. 1.

- 대부분의 기업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이 적립되지 않고 회계장부상의 부채로 기록된 상태에서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운영자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관행임(총 퇴직금 적립의무금의 40%까지 사내적립된 금액에 대해서

도 손비인정). 이런 관행으로 인해 기업의 일시적인 부도가 발생할 경우 법정퇴직금의 안정적 지급보장이 위협받고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우선변제 조항과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보장장치가 있으나,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에 한정되고 있으며 그 금액도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어 완전보장에는 미흡함.

- 법정퇴직금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 및 비정규직노동자 적용확대, 퇴직보험제도 강제화 내지는 사외적립 의무화를 통한 안정적 지급보장 확보, 일시적인 기업부도로 인한 임금채권보장법의 보장범위 확대 등으로 퇴직금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노후소득보장체제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임. 즉, 국민연금, 법정퇴직금, 개인연금의 3층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임.
- 기업연금이 노후소득보장장치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가입자의 상당부분에 적용이 되어야 하나, 기업연금 도입시 이의 적용확대를 하지 않을 경우 본래의 취지인 노후소득보장체제로 볼 수 없음. 즉, 법정퇴직금제도를 존치시킨 가운데 기업연금제도가 임의제도로 도입되는 만큼 5인미만 사업장 및 비정규노동자에 대하여도 법정퇴직금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가운데 도입이 시도되고 기업연금제는 결국 증시 부양을 위한 조치로 밖에 이해될 수 없음.

: 정길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1국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토론회 토론문, 2002.. 11. 1.

- 현행 퇴직금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법정 강제제도로써 우리 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퇴직금으로 대체하던 퇴직 및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으로 제도화된 이후에도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업들은 이중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인 바, 기업연금제 도입은 이같은 현행 퇴직금제도의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함. 즉, 퇴직금의 기업연금 개편을 통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제도화하고,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장하며, 기업들의 과중한 법정복지비용을 감소해야 함.

: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복지팀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토론회 토론문, 2002.. 11. 1.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생명과학산업이 인간과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생명윤리관련법률의 조속한 입법은 필요함.
- 특히 국내·외 일부 급진적인 단체들의 인간복제 시도 등 생명과학 및 동 산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인간복제 금지 등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시급함. 그러나 입법예고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이 빠르게 변화하는 생명과학 분야의 기술개발 추세와 균형·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생명윤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산업계의 연구개발 및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상존하고 있음. 특히, 난치병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분야이며, 국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체세포복제와 이종간 핵이식 연구를 사실상 금지시킴으로써 국내 기술의 사장, 전문연구인력의 해외 유출, 중국적으로 선진국에 기술 종속의 우려를 낳을 소지가 심대함.

: 이하 전국경제인연합회·산업계,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에 관한 산업계의 의견, 2002. 9. 26.

- 생명과학 기술 및 산업이 인간과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기에 생명윤리 관련 법률의 제정은 당연하며, 조속히 수립되어야 함. 특히, 국내·외 일부 급진적인 집단들의 인간복제 시도 등이 생명과학 및 동 산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인간복제 금지 등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시급함. 그러나, 치료 및 연구목적으로 실시되는 인간의 배아를 이용한 이종간 교잡행위, 배아복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시간을 두고, 민·관 합동 생명윤리위원회(가칭) 내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입법화되어야 함. 세계적으로 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무조건적인 금지는 세계적 수준의 국내기술 사장, 중국적으로 선진국에 대한 기술종속화를 낳을 우려가 있음. 생식목적은 제외한 치료 및 연구목적의 체세포 복제, 인간의 배아를 이용한 이종간 교잡행위는 허용되어야 함.

: 전국경제인연합회 생명과학위원회 대정부 건의문. 2002. 8. 23.

- 생명과학 분야의 급속한 발전은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실제로 인간배아 복제 등의 시도를 통해서 윤리적·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바, 관련 법률의 제정이 대단히 시급함.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 생명윤리에 관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의·결정하는 기구로써 대통령 산하에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와 기술의 허용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함.

<인간개체복제 금지>

-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체세포핵이식에 의해 배아를 만들거나 이를 자궁에 착상, 임신진행, 출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종간 착상의 방법에 의해 배아를 만들지 못하도록 함.

<인간배아복제의 금지>

-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인간배아를 만들 수 없고,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거나 사망한 자 또는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하여 배아를 만들 수 없으며, 배아, 정자 및 난자의 정도관리를 엄격히 함.

<유전자 검사의 제한>

- 의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피검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를 해서는 안되며, 상업적 목적의 유전자검사의 경우,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학적 입증이 확실한 경우에 한해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금지 및 유전정보의 보호>

-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직무상 알게된 타인의 유전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유전자 치료의 범위>

- 유전자 치료 임상연구 및 기술은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중증 질병치료나 유전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치료로서 대체치료법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함.

<동물의 유전자변형연구의 제한>

- 실험동물의 존엄성도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의 허용범위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심의·결정하도록 함.
: 이상 생명윤리법제정공동캠페인단,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서, 2002. 11. 6.

○ 암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2003년 상반기중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진료를 국가가 관리하는 사업 등이 시행될 것으로 보임.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의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설치, 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이에 따른 세부계획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암관리법’제정하고자 함. 이 법은 체계적인 암관리를 위해 ‘암등록 통계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각종 암의 체계적인 연구·검진·치료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펼치도록 하고 있음. 법이 발효되면 이르면 2003년 상반기부터 국·공립병원이나 보건소의 의료진이 말기 암 환자 집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말기 암 환자 관리사업’이 시범 실시될 예정임.
- 이 사업은 치료가 어려워진 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진료비가 일반 의료가 보다 낮게 정해지며, 저소득층에 대한 암 조기 검진 비용을 정부가 지원, 40세 이상 저소득층은 2003년부터 간암, 2004년부터 대장암 검사를 2년마다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임. 이와 함께 암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속효성 경구용 마약’4종에 대해 연내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들이 복용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일보, 2002. 10. 3.

○ 의료분쟁관련 입법의견

- 의료분쟁조정법안에서는 그 동안 쟁점이 되어 온 의사의 형사처벌 특례문제에 대하여 의사가 의료배상 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 공제조합의 책임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7가지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원칙을 채택하였고, 의료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에 앞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제안하고 있음(이인영, 한림대 법학과교수).
: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관련 공청회, 2002. 8. 29.

○ 장애인·여성 할당제관련 입법의견

- 어떤 이유에 의해서 특정집단이 경쟁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배제될 경우 할당제가 필요해지는데 이는 경제학 용어를 빌리면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어려울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할당제를 통해 이들 특정집단에 특별한 고려가 주어질 수 있으며 그 예로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장애인들임. 태생적으로 또는 사고로 인해 자유로운 경쟁에 참여하기란 애초부터 불리한 사람들에게 일반인과 똑같이 경쟁하라는 것은 공평치 못한 일인바, 장애인에 대한 할당제는 경제정의 차원에서 고려할 만함.
- 이와 함께 우리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문제는 더 심각함. 남녀 모두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많은 돈을 들여 교육투자를 하지만 정작 그 대가를 거두려 할 때 여성들은 배제되는 것이 우리 현실로 이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으며, 이는 공정경쟁이라는 차원에서도 부당한 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할당제는 정당화할 수 있음.
- 지금은 정보화시대로 근력에 의하기보다는 지력(智力)에 의한 노동이 대우 받는 시대임에도 우리나라 여성전문인력은 차별 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취업·승진 모든 면에서 부당하게 배제되고 차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대졸 이상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국가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고 출산 후 재취업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한다는 사실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바, 이제는 우리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해 여성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할 때로서, 최소한 공공부문에서라도 일정비율 여성을 채용하고 승진시키는 적극적 행동(affirmative action)을 시작할 필요가 있음.

: 오성환, 서울대학교경제학교수 : 조선일보, 2002. 9. 13.

법원 · 법무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

- 법개정안에 따르면 2003년부터 피해자로부터 퇴거, 격리, 접근금지 등 법원이 내린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을 어긴 가정폭력 가해자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강제 구금되며, 가해자가 자녀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교장 및 교사 등은 보호대상 어린이의 전학, 진학, 취학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엄수를 의무화하는 한편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 취소, 종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피해자와 보호관찰관 뿐만 아니라 검사도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에 검사도 항고할 수 있는 항고권을 신설하였음.

: 법무부, 한국일보, 2002. 8. 29.

○ 공증인법 개정의견

- 소송만능주의의 팽배로 인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공증업무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고 또한 공증행위가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에 있어서 보다 유효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증업무의 직역을 상당 부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예컨대 토지·건물의 명도사건의 공정증서에 집행문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되는 매매계약서는 반드시 공증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 등을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 외에도 선진 각국의 공증제도를 깊이 연구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는 즉시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하여 공증인법의 개정이 필요함.

: 법률신문해설, 2002. 10. 5.

○ 사면법 개정의견

- 사면권은 원래 군주시대의 국왕의 은사제도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군주국가에서조차도 그 남용이 문제되어 온 것이며, 따라서 오늘날의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면권이 더 이상 무제한적인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존립할 수는 없는 것임.

- 특히 사면권은 형벌의 선고는 사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임에도 대통령이 사법권의 행사에 개입하여 그 효과에 변경을 가한다는 점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법을 비롯한 대통령제를 취한 많은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에 기속되기 마련인 법원의 판결이 시대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정의의 관념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그 부당함을 시정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임. 따라서 사면권의 행사는 이러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일정한 요건과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
-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국가가 형벌권의 행사를 포기함을 의미하는 사면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엄격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행해져야 할 것임.

: 정진경 서울지법판사, 법률신문 2002. 8. 14.

- 사면권의 오·남용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현저히 해이해 지고 그 결과 법을 지킨 사람만이 손해라는 의식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 지고 있음. 사면권의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사면권은 일반적으로 통치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이론이 주장되고는 있지만 사면권은 대통령에 의하여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도전이며, 삼권분립의 대원칙에 대한 예외임. 사면권의 한계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과 헌법내재적 한계가 없을 수 없는 것으로 사면권이 오·남용되어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어서는 안되고, 사면권의 불가피한 행사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함. 사면권의 행사를 정권의 편의에 따라 마구 남용하는 현실에서는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바, 대법원이 주도하는 사면위원회가 설치되어 사면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케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사면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와 사면 조건이 명확히 법률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신문 해설, 2002. 8. 19.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안

- 2003년부터 병무청과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체신청에서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4~9급 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갖고 직접 수사하도록 하여 앞으로 사법경찰권을 갖는 공무원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지휘를 받으면서 법원에서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및 입영 기피사범을 단속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병무청 소속 4~9급 공무원은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규정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감청설비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부와 중앙전파관리소, 체신청 소속 4~9급 공무원도 사법경찰권을 갖게 될 예정임. 그러나 98년부터 진행된 군·검의 병역비리 수사에서 병무청 직원들이 상당수 병역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점을 감안하면 병무청 직원의 수사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있음.

: 동아일보, 2002. 9. 7.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의견

- 지역별로 일정규모 이하 보증금을 내고 새로 임차계약을 체결한 상가 임차인들은 최대 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받게 되고, 임차 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건물소유주가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며, 임대료 상한선이 연 12%로 제한되어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등기처럼 경매·공매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됨.

: 한국일보, 2002. 10. 24, 중앙일보, 2002. 10. 25.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가칭) 제정의견

-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별 적용범위는 환산임대료 기준으로 △서울 1억6000만원 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억2000만원 이하 △기타 광역시 1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 9000만원 이하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에서는 임차인 보호범위로 명동, 신촌, 강남 등 서울 주요지역의 상가가 대부분이 제외되어 있는 바, 입법 자체가 무의미함.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보호범위를 전체 상가의 95% 수준인 10억~13

억원 수준까지 올리고 임대료 최고 인상률도 법개정안의 연 12%에서 5%로 대폭 낮춰야 함(송태경,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 정책위원).

- 법개정안은 상가 임차인들만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이 법의 파급효과로 은행들은 상가 신축이나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을 크게 줄이게 될 것인바, 금융지원이 움츠러들 것임(이상진, 기업은행차장).
- 보호범위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를 놓고 있는 건물주인들이 법 제정을 계기로 임대료를 인상할 것인바, 임차인들이 역(逆)피해를 볼 우려가 많음(이건호, 대한변호사협회 대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2002. 8. 23.

- 사업용 건물의 보증금이나 월세 등은 그 주변상가의 신축이나 경기변동에 따라서 민감하게 변동하고 주택과는 달리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한 시장원리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원리를 무시한 채 이것을 통제하는 것은 암암리에 권리금이나 사례금의 명목으로 따로 금전을 수수하는 부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실화해서 적정하게 시행령에서 규정하여야 함.
- 보증금의 일정액에 대해서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건물을 담보로 취득하고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의 금융관행에 큰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많은바, 경매과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과 담합하여 업무용 상가건물을 세분화함으로써 선순위 권리를 배제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임

: 법률신문 해설, 2002. 9. 2.

○ 상법 개정의견

- 현행 제도에 따르면 배당을 받게 되는 주주는 연말에 결정되는데(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얼마의 배당을 받을지는 보통 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비로소 알 수 있어서 투자자들은 중요한 투자 정보인 배당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로 투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바, 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기업이 배당을 얼마나 할지를 주주총회 없이도 수시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배당받는 주주는 그 뒤로 정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함.

- 현재 상장기업은 1년에 두 차례만 배당을 할 수 있지만, 이를 3개월에 한번씩 연 4회까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밖에 상장기업의 배당이 얼마인지 사전 공시할 때 현행 액면배당률 기준으로 공시하던 것을 금지하고, 시가배당률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함. 액면가가 5000원이고 현재 주가가 10만원인 A기업이 1주당 1000원의 배당을 할 경우 현재는 배당률이 2%(1000/5000)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배당률이 1%(1000/10만)라고 공시해야 한다는 의미임

: 한국증권법학회, 『배당투자 활성화 방안 보고서』, 조선일보, 2002. 8. 30.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의견

- 의문사위원회의 조사권한 한계와 조사기간 부족으로 억울한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의혹만 키운 채 조사가 중단되었는 바, △의문사위원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강제수사권 부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하여야 함. 강제구인권 등이 없어 실제 접근에 실패하고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는 바, 특별검사제와 함께 거짓진술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청문회가 도입되어야 함.

: 한겨레신문, 2002. 11. 5.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국내 영주자격을 가진 경우 재입국 허가를 면제하고 외국인에 대한 채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여권을 확보하는 것을 금지하며 외국인 불법입국을 알선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과함.

: 조선일보, 2002. 10. 16.

○ 통합도산법(가칭) 제정의견

-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 3개 법률로 나뉘진 현행 도산법 체제가 도산기업을 처리하는 데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함. 통합도산법을 도입해 도산절차를 단일화하면 기업이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고 한 절차에서 다른 절차로 쉽게 전환할 수도 있음. 또한 최근 선진국들이 기업의 재건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산법을 손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새로 제정되는 통합도산법(가칭)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재건을 도와주는 법률이 되어야 할 것임.

: 동아일보, 2002. 10. 7.

- 3개 법률(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로 나뉘어진 현행 도산법률체제가 비효율적인 바, 도산절차가 단일절차로 운영될 경우 기업의 절차선택 부담이 해소되고, 타절차로의 전환도 용이해지는 등 제도이용과 관련한 전반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또한 기업갱생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통적으로 기업재건을 중시하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물론 엄격한 채권자 중심이었던 독일의 도산법에서도 최근 기업재건기능이 강화되는 추세임.
 - 부실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도산절차 이용을 기피할 경우 부실이 심화되어 결국 타기업 연쇄도산이나 금융기관 부실문제로 이어지는 바, 부실화 초기 단계에서의 도산절차 이용의 중요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경영진에 대한 징벌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현행 도산법률의 개선이 시급함. 이와 관련하여 미국식 사전조정제도의 도입을 통한 도산절차 진행기간의 단축,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인정, 도산신청과 동시에 재산보전 및 중지명령이 발효되는 자동중지제도의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음. 반면, 재건형 도산절차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필요적 파산제도는 기업들의 도산제도 이용기피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폐지하여야 함. 도산기업 경영진 선임시 비리·무능 경영인 배제, 경영진에 대한 채권자 감독기능 강화 등 새로운 도산절차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도산업무를 처리하는 법원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파산전문법원을 설치하여야 함.
- : 전국경제인연합회, 『도산관련 통합법률 제정에 관한 의견』, 2002. 10. 7.

- 통합도산법 시안에서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나, 중대한 부실책임이 없다면 기존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회 전반에 성실히 노력하기보다는 남의 돈을 빌려쓰고도 갚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개인회생제도의 취지는 파산에 직면한 개인이라도 봉급생활자, 전문직종사자, 자영업자 등 당장의 어려움만 벗어나면 채무의 상당부분을 상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시키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빚을 갚도록 하겠다는 것임. 그러나 이 제도는 대다수 성실한 생활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어도 빚만 얻어쓰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흔들리게 할 수도 있음.

- 부실기업 경영주가 경영권 유지를 위해 법정관리보다 화의제도를 고집해 구조조정을 지연시켰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제한적으로 경영권을 유지시켜 주기로 하였던 바, 부실기업주가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자신의 이득만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임.
-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제도 시행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부실기업에게 회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이미 성실히 노력해온 우량기업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일이며 또 부실을 치유하기 위해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도 국가적으로는 필요한 정책일 수 있으나 개인들로서는 불공평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므로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대량 개인 파산을 막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시행과정에서의 지나친 온정주의나 무분별한 구제 방식은 배제되어야 함.

: 이상, 법률신문 2002. 11. 2.

<과중채무자 양산방지대책>

- 과중채무자 양산방지와 회생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위하여 먼저, 과중채무자의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카드남발을 막기 위하여 ①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남발 방지 ②급여명세서, 납세증명서 등 소득증명 방식의 명확화 ③방문판매식으로 길거리에서의 카드발급 금지. 경품을 통한 카드발급의 유인 금지 ④소득확인이 어려운 인터넷, 텔레뱅킹 방식의 카드발급 제한 등 원칙적으로 카드사용자가 필요에 의하여 카드발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아닌 카드모집원을 동원한 카드 발급을 유인하는 방식의 카드 발급은 제한해야 함.
- 또한 자기소득에 맞지 않는 과도한 카드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현재 현금서비스 비중이 63%에 이르러 본래의 기능인 신용판매 보다 사실상 대출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비중을 50% 이내로 제한해야 하고 ②위와 같은 간접적인 감독방식은 그 효과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카드사용자의 사용한도액을 소득에 비례하여 일정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카드사가 카드사용한도액을 정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감독방식도 고려되어야 함.

<개인갱생절차 제도의 도입>

- 나아가, 과중채무자 갱생을 위한 개인갱생절차법의 도입되어야 함. 미국의 경우 파산법내에 우리나라의 회사정리법처럼 채무자 개인이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변제계획안대로 변제하면 면책해 주는 개인갱생절차가 있고 일본의 경우는 1980년대 위기상황에서 미국식의 개인갱생절차법은 없었지만 법원이 일부면책, 일부변제 제도를 활용하여 사실상 개인갱생절차제도로 파산법상의 면책제도를 활용하였음. 그러나, 과거 우리의 경우는 법원이 파산법상의 면책불허가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신용카드로 인한 파산자는 과소비의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파산법상의 면책조항은 개인갱생절차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최근 일본이 민간갱생법과 같이 개인갱생절차제도를 입법화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개인갱생절차법을 도입해야 할 것임.

- 최근에 개인회생절차의 방편으로 은행연합회내에 설치된 개인신용회복지원 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에 대하여 워크아웃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부실기업에 대출을 한 채권금융기관들이 법원을 통하지 않고 협약을 통하여 부실기업을 갱생시키는 제도를 개인파산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운영하려는 취지일 것이나,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채권자의 은혜적인 워크방식으로는 개인갱생제도가 크게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져, 적어도 금융감독원과 같은 감독기관내에 개인갱생절차 분쟁조정제도를 신설하거나 미국의 CCCS(소비자신용 상담기구)와 같이 민간 비영리 개인파산자 구호기관에서 채권자와 개인파산자를 중재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임.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 ‘과중채무자 양산 실태와 회생제도의 필요성’, 개인회생제도 도입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02. 11. 5.

- 2003년 7월1일 도입을 목표로 법무부가 공개한 통합도산법(가칭) 시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게 돼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음.
- 통합도산법은 기존 회사정리법과 파산법을 그대로 물려받아 개인 파산자의 보증채무를 유지시키고 있다며, 이는 개인회생제도의 뼈대를 이루는 면책제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박주일, 우리은행 강동기업영업본부장).
- 시안대로 시행될 경우, 주채무자가 갚지 않게 되는 빚을 보증인이 모두 덤터기 쓰는 꼴이 되고, 나아가 보증인이 빚을 갚은 뒤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

사할 수도 있어 주채무자가 다시 빚에 허덕이는 악순환도 우려됨. 보증채무 면책이 없을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자는 파산 신청을 주저하거나 단념하게 되기 쉬운 바, 기업 도산 때 적용되는 보증채무 존속을 개인 파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임(장수태, 한국소비자보호원 법령기획단 부장).

- 통합 도산법의 주요 내용을 보완해야 하는 바,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를 도입해야함. 자동중지제도란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채권자의 집행이 정지되는 제도를 말함.
 - 도산 관련법을 갑자기 통합하면 경제계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음. 장기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요망됨. 독일은 도산법을 개정하는 데 21년이 걸린 반면 한국은 도산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기간이 1년5개월에 불과함(손지호 서울지법 파산부 판사).
 -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가 회생기업의 관리인이 되는 DIP(Debtor In Position)제도는 일부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필요함. 관련 법률 조항을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함(백창훈 변호사).
 - 정부 시안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필요적 파산제도)를 하고, 회생절차가 인가되지 않을 때는 임의로 파산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음. 필요적 파산제도는 없애고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해야 함(김석중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 파산자에 대해 거주와 통신비밀 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너무 가혹한 조치임. 현행 파산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규정된 파산자 자격 제한도 재검토해야 함(장수태 소비자보호원 부장).
 - 장래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파산시키는 것보다 회생시키는 것이 사회의 효율성을 높일 것임(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
- : 통합도산법 관련 공청회, 2002.,11. 6.

- 그 동안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기존 도산3법은 부실기업 경영주의 도산절차 이용기피, 절차진행 지체, 낮은 기업갱생률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서 도산법제의 전면 개편작업이 진행되어 왔고, 그 결과로서 통합도산법(가칭)은 도산법률체제 간소화, 절차진행의 신속화 도모, M&A 촉진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법률로서 도산법의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다만, 사적 정리절차의 이용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필요적 파산제도가 존치되는 것, 효과적인 재산보전

조치로서 그 도입이 검토되어온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 도입이 유보된 것이 아쉬운 부분임. 또한, 기업재건활동에 필수적인 신규자금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보완되어야 할 것임. 특히 법원의 전문성 확보가 성공적 도산제도 운용여부를 좌우하는 요인인 만큼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와 같이 파산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데, 개인회생제도 등 도산제도 이용건수가 급증할 것이 분명한 현실에서 파산전문법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http://www.fki.or.kr/>, 2002. 11. 6.

- 현행 도산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치게 징벌(懲罰)위주로 운영되어 기업들이 그 이용을 꺼린다는 점으로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할 경우 기업의 경영진은 주식 전액소각, 경영권 박탈 등의 조치는 물론 불의의 파산선고에 직면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 ‘재정적 궁핍으로 파산에 직면한 기업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재건(再建)을 도모한다’는 법제정 취지와는 다른 내용이었고, 그 결과 기업들이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실문제에 직면하고서도 도산신청을 기피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투기적 경영행태를 보여왔음. 결국 부실이 커질 대로 커져 정상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다음에야 도산제도를 신청하게 되어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손실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는 바, 제정될 「倒産法」에서는 이 같은 악순환(惡循環)을 차단하기 위해 부실화 초기단계에서 도산절차 진입을 유도하는 몇 가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짐. ①현행 회사정리법상 관리인제도를 존치시키되 기존 경영진의 관리인 선임을 원칙으로 하여 경영권박탈에 대한 우려를 덜어 주고, ②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영자라 할지라도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舊경영진의 경영노하우가 기업재건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기존 경영진에게 도산기업 경영권을 주는 것에 대해 부실경영을 조장, 방관하는 조치라며 반대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러한 시각은 무능(無能), 비리(非理)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은 상법 등 타 법률들에 의한 민·형사상의 처벌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도산법률이 특정인에게 징벌을 가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신속한 기업회생에 제정취지를 둔 법률이라는 점에서 볼 때 적절하지 못한 것임.

- 도산기업 관리인의 비리행위 및 권한 誤·濫用문제는 이해관계자의 견제기능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채권자협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경영진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감독기능을 수행하게끔 하고, 도산기업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함. 이러한 조치들로 제정법에서는 채권자에게 회생절차 신청권을 보장하고 감사선임에 대한 의견제시 권한을 주는 것은 물론 도산기업의 관리인을 기존의 경영진이 아닌 제3자로 선임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권리가 부여되었고, 채권자협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까지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됨.
 - 재건절차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게 한 필요적 파산선고(破産宣告)제도의 경우, 『倒産法』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하였으나, 지난 몇 년간의 실시를 통해 得보다 失이 큰 제도라는 것을 확인해 본 이상 적용완화보다는 제도의 전면폐지가 바람직함.
 - 도산절차 초기단계에서 기업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는 것은 회사의 재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간 형평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 현행 재산보전제도는 보전조치가 내려지는데 14일간의 여유를 둔 점과 개별적으로 중지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지적되어 온 바, 재산보전처분 결정기간을 7일로 단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를 새로이 도입함. 다른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산절차 신청 즉시 자동적으로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는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를 두고 있는데, 우리 『倒産法』에서도 이의 수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倒産法』 제정시안은 도산기업이 신규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바, 회생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미국 파산법의 DIP(debtor-in-possession) Financing에 준하는 신규자금 조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신설되는 청산가치보장제도는 그 실효성이 회의적인 만큼 제도도입을 再考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기업 및 개인의 재건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도산제도에 대한 인식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 倒産, 整理, 법정관리 등 도산관련 기존 명칭자체들은 정벌, 퇴출 등 부정적 의미로서 인식되고 있으므로, 『倒産法』 대신에 『回生支援 및 破産法』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 이상 전국경제인연합회 손경숙 경제조사본부 과장, 2002. 11. 13.

※ [도산법 제정(안)] 2002. 11. 12.

<총 칙>

- 현행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하고, 현행 3법은 폐지하는 한편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전면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1개의 회생절차로 일원화함.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 법인을 구분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다만 개인회생절차는 개인 채무자로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만 적용대상으로 함. 법률의 목적은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파산절차를 통한 채권자의 최대한 만족을 도모하는 것으로 함.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도산절차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도록 함. 도산사건의 관할에 관하여 법인 등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 법인이 아닌 개인이거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채무자인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 상호연대채무나 보증관계에 있는 자, 부부 등은 동일한 관할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파산선고 전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이 필요적으로 파산을 선고하도록 하고,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의 결정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이 임의적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채권자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비롯한 채무자(개인은 제외)에 대하여 채권자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그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감사를 추천하며 회생계획인가 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자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 도산절차 중에 있는 회사 등에 관한 M&A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문서와 기타 물건을 포함한 사건기록의 열람, 등사 또는 그 정본 기타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산절차 중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 규정을 신설함. 도산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

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도산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고, 특히 파산 선고나 면책 결정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득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함.

<회생절차>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채무자(개인 및 모든 종류의 법인 포함)가 변제불능 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로서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또는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아닌 채무자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종래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규정되어 있던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회사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한 때”를 삭제하여 개시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이해관계인이 보전처분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회생절차의 신청이 있을 때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포괄적 금지명령 제도 신설), 이러한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인하여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가 부당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괄적 금지명령을 해제하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회사정리법에서는 회생계획에 의한 영업양도만이 인정되었으나,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M&A 등을 통한 기업의 조기 회생이 가능하도록 함. 현행 관리인제도를 유지하되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조기에 회생절차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회생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①회생채무자 자신이나 개인이 아닌 회생채무자의 대표자의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②채권자협의회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회생채무자의 부채가 자산보다 현저히 많은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 회생채무자가 친족관계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 중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 이 있는 후에 한 회생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악의를 추정하도록 하고,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회생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의 경우에 그 범위에 관하여는 종래 지급의 정지가 있는 후 또는 그전 '60일' 이내에 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회생채무자의 악의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종래 단체협약에 미이행 쌍무계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단체협약도 쌍무계약에 관한 도산법상의 일반 법리가 적용되도록 함.
- 조세채권의 경우 징수 유예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징수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종래에는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절차에 관하여 채권신고→조사 기일에서의 조사 및 확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관리인에 의한 목록(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또는 지분권자)제출신고기간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채권조사확정절차를 개선함. 채무자 회생을 위하여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 중에서 인정상여에 대한 조세채권을 공익채권에서 제외함.
- 채권자가 채권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의 적정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함. 회생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주식회사인 회생채무자의 회생에 기여하여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인 경우 채권 채무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채권자가 회사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연장하는 경우에도 1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함.
-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에 관하여 종래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으로 그 요건을 완화함. 회생계획

안의 가결 시기를 종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기일부터 ‘2월’내에서 ‘1월’내로 단축하고, 서면결의제도를 도입하여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도 회생계획안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절차 진행을 도모함.

-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으로 청산가치보장 규정을 신설하여 회생계획에서 회생담보권자에게는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청산할 때의 가치 이상으로 권리자에게 지급하고, 회생채권자에게는 회생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 이상을 지급하도록 함. 회생계획의 인가 후 직권 또는 채권자협의회의 신청으로 회생채무자의 재산 또는 영업상태에 관하여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안 인가이후 회생계획 수행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파산 절차>

- 면제재산의 범위를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의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이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주거비, 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되도록 하여 파산자에게도 기본적 생활은 가능하도록 함. 주택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별 제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파산절차에서도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보호되도록 하는 한편, 다른 법률(예를 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권을 규정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우선변제권은 파산절차에서도 유지됨을 명시함.
-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그 기각사유로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법원에 채무자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기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화의를 폐지함에 따라 종래 파산법에 규정되어 있던 강제화의 규정을 폐지함.
- 간이한 파산절차인 소파산 절차에 의할 수 있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을 종래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함.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종래 파산선고 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도록 하던 것을 파산신청 시부터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면책만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채무의 전부를 면책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의 일부만 면책할 수 있도록 함.

<개인 회생 절차>

- 파산원인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갖도록 함.
- 부부사이의 공동생활로 인한 공유재산, 채무보증관계 등을 고려하여 부부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채무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함.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개시여부결정을 하도록 하고, 개시결정과 동시에 2개월 이내의 기간내에서 채권에 대한 이의진술기간, 채권자집회의 기일을 정하도록 함. 법원은 필요한 경우 관리위원 또는 법원사무관 등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의 조사, 부인권의 행사, 변제계획안의 인가 또는 변경을 위한 채권자집회의 진행 기타 법원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을 위하여 채권의 확정절차를 간이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별도의 채권신고·조사절차를 두지 않고, 다만 채권에 대한 이의진술기간을 두어 이의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채권확정결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되도록 함. 변제계획에서는 변제계획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입 또는 재산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단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변제계획은 공정, 형평하고 수행가능하여야 하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변제계획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채권자가 받을 변제 총액의 가치가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과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로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으로 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법원이 인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절차에 관하여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하고, 변제계획인가 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채무자가 면책결정도 받지 못하는 때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하도록 함.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도록 하고,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도록 함.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나 벌금, 과료 등은 예외로 함.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도 면책결정일까지 변제한 금액이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채무자가 기망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 면책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국제 도산>

- 국제도산의 적용범위를 외국도산절차에서 관리인이나 대표자로 인정된 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파산관재인 등이 국내도산절차와 관련하여 외국법원의 절차에 참가하거나 승인 및 지원을 구하는 경우로 함. 외국도산 절차 승인 및 지원사건은 서울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관할로 함. 다만, 절차의 효율적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결정과 동시 또는 결정 후 채무자의 영업소, 주소지 등의 관할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대한민국 법원에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대한민국 법원은 신청후 1개월 이내에 승인결정을 하도록 함. 외국도산절차 승인

결정이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절차의 개시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재산이전이나 담보제공, 이를 처분할 권리의 정지와 같은 지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신청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에는 그 지원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함.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 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 심리하도록 하고, 수 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함으로써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원에 국내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거나 상호 관련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 또는 수 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외국법원이나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의견교환 방식, 채무자 자산 및 업무에 관한 관리 및 감독, 복수 절차의 진행에 관한 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조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고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도록 함.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 또는 수 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가 공평한 배당을 받도록 함.

<별 칙>

- 종래의 과태과산죄에 해당하는 행위 중에서 ‘낭비’와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개념이 모호하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삭제함. 뇌물죄에 대한 국외범 규정을 신설하여 대한민국 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처벌 가능하도록 함.
: 이상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보도자료, 2002. 11. 1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 개정안

- 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기술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금품수수행위를 포함하고, 특정재산범죄 행위자의 유관기업체 및 금융기관 취업제한 조항을 삭제함.
: 조선일보, 2002. 10. 16.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국민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는 바, 개정안에 따르면 전과기록의 하나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입건하면 작성하는 수사자료표 내용을 누설하는 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다른 사람의 범죄경력 관련 자료를 법에 정한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며 당사자가 수사자료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함.
- 전과기록 범위가 넓어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기존 수사자료표를 벌금형 이상의 범죄가 기록되는 ‘범죄경력 자료’와 벌금형 미만이 수록되는 ‘수사경력 자료’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함. 특히 수사경력자료에 올라 있는 대상자가 △기소유예△혐의 없음△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거나 무죄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이 내용을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하기로 함. 법률 개정예 따라 현 제도에서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4백여만명이 ‘전과자’신분을 면할 것으로 예상됨.

: 중앙일보, 2002. 8. 21.

- 벌금형 미만의 선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 등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전과기록은 선고 또는 처분 후 5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삭제·폐기함.

: 조선일보, 2002. 10. 16.

※ 국회처리 법률목록 및 주요법률 요지(2002년 11월 14일 현재)

◎ 국회처리 법률목록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개정)	2002. 11. 7.
- 가축전염병예방법(전문개정)	2002. 11. 12.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개정)	2002. 11. 8.
- 개항질서법(개정)	2002. 11. 12.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개정)	2002. 11. 8.
- 건설산업기본법(개정)	2002. 11. 8.
- 결핵예방법(개정)	2002. 11. 8.
- 경비업법(개정)	2002. 11. 7.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	2002. 11. 14.
- 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	2002. 11. 8.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개정)	2002. 11. 7.
- 고용보험법(개정)	2002. 11. 8.
- 골재채취법(개정)	2002. 11. 8.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개정)	2002. 11. 8.
-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정)	2002. 11. 7.
- 과학관육성법(개정)	2002. 11. 12.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제정)	2002. 11. 12.
- 관세법(개정)	2002. 11. 7.
- 관세사법(개정)	2002. 11. 12.
- 교육공무원법(개정)	2002. 11. 12.
- 교육기본법(개정)	2002. 11. 12.
- 국가공무원법(개정)	2002. 11. 7.
- 국고금관리법(제정)	2002. 11. 7.
- 국민건강보험법(개정)	2002. 11. 8.
- 국민투자기금법(폐지)	2002. 11. 7.
- 국세기본법(개정)	2002. 11. 7.
- 국세징수법(개정)	2002. 11. 7.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개정)	2002. 11. 7.

- 군무원인사법(개정)	2002. 11. 7
- 군인보험법(폐지)	2002. 11. 7
- 군인사법(개정)	2002. 11. 7
- 군인사법(개정)	2002. 11. 14
- 군인연금법(개정)	2002. 11. 8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개정)	2002. 11. 7
- 나노기술개발촉진법(제정)	2002. 11. 12
-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	2002. 11. 7
- 농약관리법(개정)	2002. 11. 12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2002. 11. 12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개정)	2002. 11. 8
- 농어촌정비법(개정)	2002. 11. 7
- 농지법(개정)	2002. 11. 12
- 뇌연구촉진법(개정)	2002. 11. 12
- 대기환경보전법(개정)	2002. 11. 12
- 대한교원공제회법(개정)	2002. 11. 12
- 대한민국학술원법(개정)	2002. 11. 12
- 도로교통법(개정)	2002. 11. 7
- 도시개발법(개정)	2002. 11. 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정)	2002. 11. 8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개정)	2002. 11. 8
- 모자복지법(개정)	2002. 11. 8
- 문화재보호법(개정)	2002. 11. 12
-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개정)	2002. 11. 12
- 발명진흥법(개정)	2002. 11. 12
-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제정)	2002. 11. 12
- 방송법(개정)	2002. 11. 12
- 법률제3287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 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관한법률	2002. 11. 8
- 변리사법(개정)	2002. 11. 12

- 병역법(개정)	2002. 11. 7
- 병역법(개정)	2002. 11. 14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개정)	2002. 11. 12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개정)	2002. 11. 8
- 산림조합법(개정)	2002. 11. 12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개정)	2002. 11. 12
- 산업안전보건법(개정)	2002. 11. 8
- 산지관리법(제정)	2002. 11. 8
- 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	2002. 11. 7
- 상표법(개정)	2002. 11. 12
- 세무사법(개정)	2002. 11. 12
- 소득세법(개정)	2002. 11. 7
- 소음·진동규제법(개정)	2002. 11. 12
- 수도법(개정)	2002. 11. 8
- 수질환경보전법(개정)	2002. 11. 8
- 습지보전법(개정)	2002. 11. 8
- 실용신안법(개정)	2002. 11. 12
-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제정)	2002. 11. 7
- 약사법(개정)	2002. 11. 8
-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	2002. 11. 12
- 여성발전기본법(개정)	2002. 11. 8
-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개정)	2002. 11. 7
- 예금자보호법(개정)	2002. 11. 7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개정)	2002. 11. 12
- 의료급여법(개정)	2002. 11. 8
- 의료법(개정)	2002. 11. 8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	2002. 11. 14
- 의장법(개정)	2002. 11. 12
-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개정)	2002. 11. 8
- 임대주택법(개정)	2002. 11. 8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개정)	2002. 11. 12
- 자연환경보전법(개정)	2002. 11. 12

- 전기통신기본법(개정)	2002. 11. 12
- 전기통신사업법(개정)	2001. 11. 12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개정)	2002. 11. 12
- 정보통신기반보호법(개정)	2002. 11. 12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2. 11. 12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	2002. 11. 7
- 조세특례제한법(개정)	2002. 11. 7
- 지방공무원법(개정)	2002. 11. 7
- 지방문화원진흥법(개정)	2002. 11. 12
- 지방세법(개정)	2002. 11. 7
- 지역신용보증재단법(개정)	2002. 11. 8
- 축산법(개정)	2002. 11. 7
- 출입국관리법(개정)	2002. 11. 7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	2002. 11. 12
- 특수교육진흥법(개정)	2002. 11. 1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2. 11. 7
- 특허관리특별회계법(개정)	2002. 11. 12
- 특허법(개정)	2001. 11. 12
-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 을 위한 특별법(개정)	2002. 11. 12
- 하천법(개정)	2002. 11. 8
- 학교용지 확보 에 관한 특별법(개정)	2002. 11. 12
- 한국전력공사법(개정)	2002. 11. 8
- 해상교통안전법(개정)	2002. 11. 12
- 해운법(개정)	2002. 11. 12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개정)	2002. 11. 8
- 행정절차법(개정)	2002. 11. 7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2. 11. 7
- 환경분쟁 조정법(개정)	2002. 11. 8
- 환경정책 기본법(개정)	2002. 11. 8

◎ 주요법률 요지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 : 2002. 11. 14. 의결
-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속히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당초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의 제명이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었으나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변경됨.

<주요내용>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4조).
-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수립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하여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가능성, 국제공항·국제항만·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의 기반시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 등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위원회 수정)(제5조)
- 경제자유구역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 등을 유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위원회 수정)(제6조).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의사영업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고유업종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제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월차유급휴가 및 유급생리휴가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전업업종에 한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파견대상업종 및 파견기간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위원회 수정)(제17조).

-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위원회 수정)(제20조).
- 외국학교법인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22조).
- 외국인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외국의 의사 또는 약사 면허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23조).
-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두고, 이를 보좌하는 실무기구로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두도록 함(위원회 수정)(제25조 및 제26조).
- 경제자유구역내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중 일정한 사무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의 전담 행정기구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함(위원회 수정)(제27조).

○ 고용보험법(개정) : 2002. 11. 8. 의결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실업급여와 재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직수당제도를 개선하는 등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종전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현행 제8조제3호 삭제).
- 일용근로자가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동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요건을 정함(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종전에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14일간은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업의 신고

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40조).

- 종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수급기간내에서 지급을 유예하였으나, 앞으로는 동 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41조제1항).
- 종전에는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만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당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제50조제1항).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개정) : 2002. 11. 8. 의결

- 산업의 집적(集積)과 연계(連繫)가 중시되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산업정책의 방향을 산업입지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공업배치에서 지역별 산업의 집적과 그 연계 등을 위한 산업집적의 활성화로 전환하고, 산업단지의 정보화기반확충 등 산업단지관리기관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률의 제명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産業集積活性化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로 변경함.
-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역별 성장유망산업의 집적 및 특화, 산업입지와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및 산업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産業集積活性化基本計劃)을 수립하도록 함(제3조).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대행센터를 공장설립지원센터로 개편하여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처리 및 대행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장설립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장설립움부즈만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 시·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知識基盤産業)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그 집적지구에 대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및제22조의2).

-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산업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 산업용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등이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제39조의2).
- 경제여건의 변화, 주변지역의 도시화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가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유망유치산업 및 산업별 집적추진방안,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추진방법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추진계획(産業團地構造高度化推進計劃)을 수립·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의2).

○ 도시개발법(개정) : 2002. 11. 8. 의결

- 도시개발방식에 있어 주택지 조성 등 단일목적에서 벗어나 주택·산업·유통기능 등이 갖추어진 균형 있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민간의 도시개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었으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도시개발구역의 규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이나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위원회수정)(제3조제3항).
-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자연녹지지역 또는 도시계획구역 밖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구역을 지정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1항, 제8조, 제11조제3항·제7항).
- 종전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위해 구역의 규모와 관계없이 항상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효율적인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구역면적이 대규모인 때에는 공청회와 공람을 병행 실시하고, 소규모의 경우에는 공람에 의하도록 함(제7조제1항 및 제2항).

- 종전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결정을 의제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시계획인가·고시된 때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결정을 의제함(제9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 제18조제2항 및 제3항).
- 종전에는 구역지정후 3년 이내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날 구역이 해제되었으나, 구역지정후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역이 해제되도록 하고,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는 구역지정후 5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거나 개발계획 수립후 5년 이내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역지정이 실효되도록 함(위원회수정)(제10조제2항 및 제3항).
-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를 토지소유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인정하며, 공공기관의 출자비율 제한을 폐지함(제11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구역 내·외의 도로 등 공공시설정비와 아울러 도시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을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허용함(제11조제2항).
-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과 제안자가 협의에 의하여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제11조제7항).
- 환지방식의 경우 조합 임원의 직무·결격사유, 총회의 의결사항 및 대의원의 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15조제3항).
- 환지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환지계획의 기준 및 보류지의 책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환지계획의 작성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폐지하며 공람실시 및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대체함(제27조제5항, 제28조제6항).
- 과소토지 이외에도 입체환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환지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교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후에도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지장물을 이전·제거를 하지 않을 경우 지장물 보상금을 법원에 변제공탁 시킨 후 시행자가 강제이전 및 제거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제4항).

- 종전에는 도시개발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금액을 차입할 경우 특별회계로의 전입이 불가하였고, 환지방식으로 지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금액을 시장·군수가 차입하여 시·군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사업중 환지방식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여 회계의 구분을 명확히 함(위원회수정)(제59조제2항 및 제3항).

○ 방송법(개정) : 2002. 11. 12. 의결

- 제8조 소유제한등의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이라는 용어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고, 개인 방송사업자 등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변경허가 규정을 보완하며, 방송사업자 전반에 대해 장애인의 시청을 돕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대규모기업집단” 규정을 폐지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규정을 신설하게 됨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로 개정함(제8조제3항).
- 개인사업자인 방송사업자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화하는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의 영업권 양도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허가 등의 여부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관련규정을 신설함(제15조제1항).
- 방송사업자의 법인명 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신고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신설함(제15조제2항 및 제3항).
- 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한정하여 장애인의 시청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방송사업자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시청을 돕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제69조제7항).

○ 문화재보호법(개정) : 2002. 11. 12. 의결

-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정하는 한편, 문화재의 절취·도굴 방지 및 그 부정한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문화재를 불법취득하여 은닉한 경우 절취·도굴 범죄자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은닉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문화재수리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동 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2항, 제18조의5제1항 및 제18조의9제1항).
- 종전에는 문화재수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중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중 일부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필기시험에 한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
-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 또는 수리기술자등록증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할 수 없도록 하며, 이들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8조의4제3항, 제18조의5제1항제6호 및 제92조제2호·제3호).
- 문화재수리공사에 있어서 최장 10년까지는 문화재수리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되, 발주자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하자담보에 관한 별도의 특약을 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까지는 당해 특약이 적용되도록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강화함(제18조의11).
- 문화재보호·보존·보급 및 전통생활문화의 창조적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문화재보호법에 의

한 특별법인으로 전환하여 그의 위상을 정립하고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77조의2).

- 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에관한협약(1988. 12. 14. 국내발효)에 우리나라가 가입함에 따라 세계유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에 이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이를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함(제78조의2).
- 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보존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문화재 및 그의 보호물·보호구역의 관리를 강화함(제79조제3항).
- 도난·도굴 문화재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절취 또는 도굴된 문화재의 은닉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 이전에 본인외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절취 또는 도굴행위 등이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제81조제4항 및 제82조제4항).

○ 소음·진동규제법(개정) : 2002. 11. 12. 의결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소음·진동실태를 상시측정하고 측정된 자료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소음·진동배출시설업소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소음·진동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사항이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과 부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관련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함(제13조제3항 삭제).
-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취소 또는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조치명령·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도록 함(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안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에 의한 속도의 제한·우회 등의 필요조치 요청권자를 시·도지사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조정함(제37조제1항).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 2002. 11. 12. 의결
-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는 급증하고 있는 스팸메일 등 악성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전화·모사전송 등에 의한 영리성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수신 거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 금지, 연락처 자동 생성을 통한 광고 전송행위 금지, 전자우편주소 추출행위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금지 등 악성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자우편 등으로 전송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전송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함(제42조의2).
-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형식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전자우편의 경우 해당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경로를 밝히도록 의무를 추가하고 음성전송의 경우는 처음에 광고임을 밝히도록 함(제50조제2항 및 제3항).
-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자가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신거부의사를 전달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누구든지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기타 장치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함(제50조제4항 내지 제6항).
- 전자우편주소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추출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제50조의2).
- 광고성 정보 전송을 외부에 위탁한 경우에는 불법한 정보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자를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손해 배상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함(제50조의3).
- 전자우편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반복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 등에는 계약내용에 반영하

여 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되, 조치 전에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제50조의4).

- 이용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화면에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 등에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프로그램 용도 및 삭제방법을 동의를 얻는 때에 알리도록 함(제50조의5).
- 개인정보침해 및 불법 스팸메일에 관한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민원처리를 위한 자료제출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함(제56조제3항).
- 개인정보를 수집한 때에 고지한 목적이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불법하게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함께 처벌함(제62조제1호 및 제2호).
-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64조제2호).
- 불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 개인정보보호 등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종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제67조제1항).